

#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2019.11.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동 자료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며,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외국환거래절차 등은 관련(해당)기관에 확인(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도서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허가없이 전재 또는 복사를 금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목적)】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는 1962년 「외국환관리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 1999년 4월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현재 규율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의 지금에 있어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을 엄격히 적용하였던 「외국환관리법」과는 달리,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Negative System을 채택하여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최소 필요 사항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이 거래 당사자에 부과한 신고 및 보고 의무 등의 제한사항에 대한 위반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행위의 상당부분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및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고, 이는 외국환거래법규가 위낙 방대하고 복잡한데다 개정도 빈번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외환업무 실무자들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015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집』 초판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간 후 4년이 경과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이 수차례 개정 되었고, 특히 외환거래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규정이 10차례 개정되어 기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집』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발간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새로운 유형의 사례들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도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령의 중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초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는 최근 2년간 외국환거래법 위규행위 조사과정에서 접한 최신 위반사례 1,900여건 중 100건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선별하였으며, 사례 내용을 주제와 행위별로 분류한 뒤 그림으로 표현하여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편집면에서는 외환거래에 대한 설명을 '절차편'으로, 거래 유형별 위반사례를 '위반사례편'으로 나누어 제재하여 독자가 궁금한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1,900여건이라는 방대한 위반사례를 일일이 확인 후 선별 및 자료 정리 작업을 함께한 금융감독원 외환검사 1·2·3팀 직원 및 외국환거래 위규사례 발굴에 협조해 준 외국환은행 실무자분들, 책자발간을 위해 협조해주신 은행 연합회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환거래 당사자 및 외환실무자들이 외국환거래절차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1 개념편** 기본개념 알고가기

I. 외국환거래 일반	2
II.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5
III. 외국환거래행위의 구조와 종류	8
IV.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의무	9

**2 절차편** 신고(보고)가 필요한 주요 외국환거래 절차

## 제1장 지급등 절차 및 방법

I. 지급과 수령	13
II. 지급등의 방법	19
III.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29

## 제2장 자본거래

I.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31
II.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34
III.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41
IV. 증권의 발행 및 증권의 취득	45
V. 파생상품거래	50
VI. 기타의 자본거래	51

## 제3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취득

I. 해외직접투자	59
II. 해외(국내) 지사	67
III. 해외부동산 취득	71
IV.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75

## 제4장 현지금융

## 참고 외국환거래 위반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3 위반사례편** 유형별 위반사례

## 제1장 지급등 절차 및 방법

I. 지급과 수령	86
II. 지급등의 방법	98

## 제2장 자본거래

I.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07
II.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10
III.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23
IV. 증권의 발행 및 증권의 취득	126
V. 파생상품거래	134
VI. 기타의 자본거래	136

## 제3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취득

I. 해외직접투자	142
II. 해외(국내) 지사	163
III. 해외부동산 취득	174
IV.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183

## 제4장 현지금융 및 기타

I. 해외직접투자	190
-----------	-----

# I 외국환거래 일반

## 1. 개념편

### 기본개념 알고가기



- I . 외국환거래 일반
- II .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 III . 외국환거래행위의 구조와 종류
- IV .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의무

#### ① 외국환거래제도의 의의

개방경제체제 하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외환 시장 및 국민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한 국가의 외국환 수요 및 공급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의 유연성 제고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한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법령의 규율을 받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 ② 외국환거래제도의 목적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외국환거래법 제1조)

舊「외국환관리법」(1961.12월)  
원칙적 규제, 예외적 자유 (Positive System)

↓ 점진적 자유화

「외국환거래법」(1999.4월)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 (Negative System)

### ③ 외국환거래 관리기구 및 주요 업무

관리기구	주요 업무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정책 수립 및 운영</li> <li>•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li> <li>• 외환거래의 비상정지 명령 등</li> </ul>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 감독</li> <li>•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업·개인 등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li> <li>•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지사설치 등에 대한 신고 및 사후관리</li> </ul>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시장 운영</li> <li>• 외환거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li> <li>• 외환증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li> <li>• 외환거래정보의 집중 및 관리 등</li> </ul>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거래 신고접수 및 확인</li> <li>• 외환거래 사후관리 등</li> </ul>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거래관련 조세부문 확인·모니터링 등</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수단의 휴대반출입 신고</li> <li>• 환전영업자 관리감독</li> <li>• 환치기, 수출입거래, 수출입거래 관련 기본거래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li> </ul>
금융정보분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거래관련 혐의거래 정보분석 등</li> </ul>

### ④ 외국환거래법령체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고시	유관기관
기본 법규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통첩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외국환 감독업무 시행세칙
관련 법규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한국은행 제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 업무취급지침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제규정·통첩
			한미행정협정, 한국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 III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 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외국환거래법 제2조)

- ①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
- ③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④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⑤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참고> 대법원 1989.2.14. 선고 88도2211 판결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수금하여야 할 수입금등을 비거주자인 그 해외지사가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면 이는 전적으로 내국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예금채권이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인 위 해외지사와 다른 비거주자인 외국은행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해외지사의 행위는 곧 본사의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금채권발생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에 저촉된다.

###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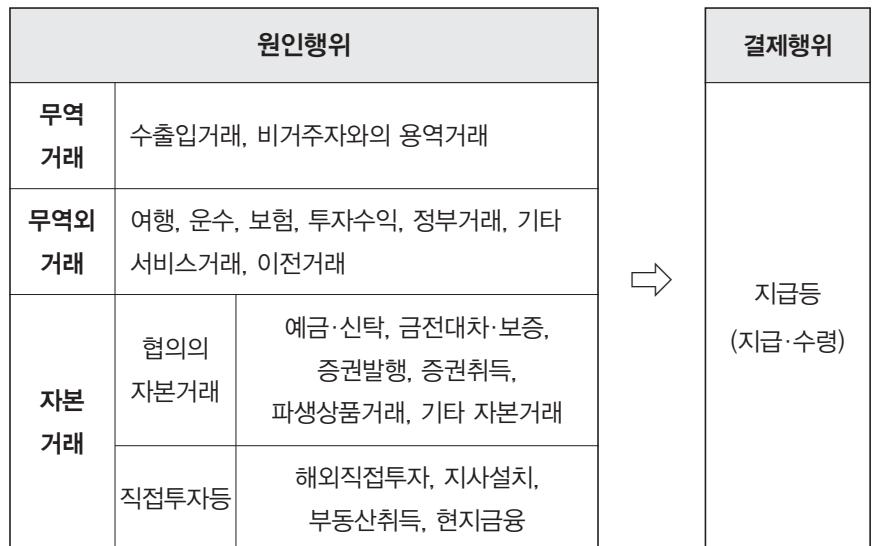
- (구분의 중요성)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적용 범위 및 신고(보고)의무의 부과를 다르게 규정  
→ 거주자(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
- (구분기준) :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함(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 구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표의 기준(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경제활동의 실질적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  
→ 국적·소재지 관련서류(주민등록증, 시민권, 거소증 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체재기간 및 영업활동 종사 여부 등의 구체적 확인 필요

구분	내용
거주자	법인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국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인 국내 영업활동 종사자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자

### III 외국환거래행위의 구조와 종류

구분	내용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국제기구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등 (이들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비세출자금기관·군사 우편국·군용은행시설)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사무소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 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국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동거 가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외국환거래는 크게 원인행위와 결제행위로 구성되고, 원인행위는 그 성질에 따라 다시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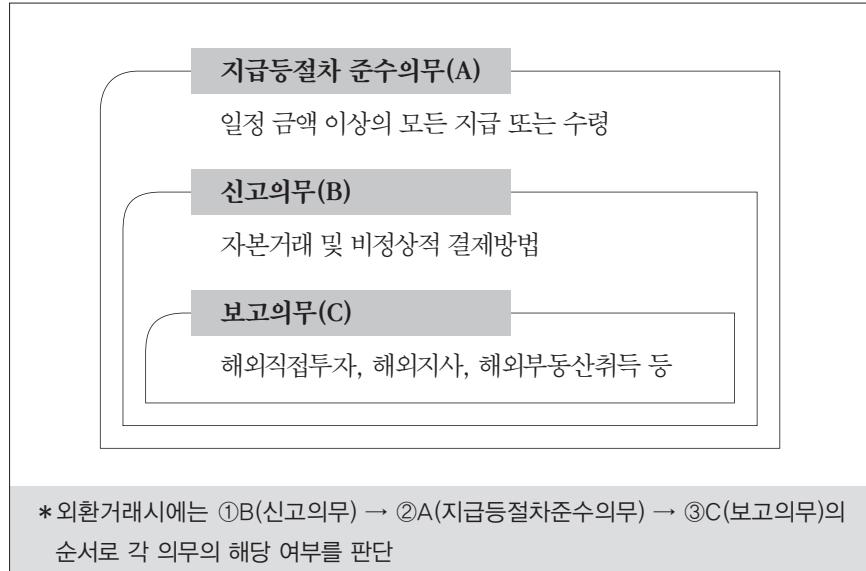
## IV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의무

외국환거래 당사자	외국환은행
신고의무	· 원인행위 : 자본거래의 신고 · 결제행위 : (다자간)상계, 제3자지급 등
보고의무	· 해외직접투자 등, 현지금융 등
지급등 절차 준수의무	· 건당 미화 5천불 초과의 지급 등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준수
회수의무	· 해외직접투자금 등 회수의무

### ① 외국환거래당사자의 의무

- 가. **신고의무** : ① 원인행위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② 다자간 상계, 제3자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비정상적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부과됨
- 나. **보고의무** :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및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 이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부가됨
- 다. **지급등 절차 준수의무** : 원칙적으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등을 하여야 함
- 라. **회수의무** :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 지급등절차, 신고의무 및 보고의무의 관계



### ② 외국환은행의 의무

- 가. **확인의무** : 외국환은행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미화 5만불(동일자·동일인 기준)을 초과하는 수령이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사유를 확인하여야 함
- 나. **사후관리의무** :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직접투자 등(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해외부동산취득)의 신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함  
**〈사후관리 방법〉**
  -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관리대장 작성
  - 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 신고등의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① 기한만료일 30일 이내에 독촉, ② 독촉 후 6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미이행 보고

## ■ 사후관리 관련 주요 제출 필요사항 및 제출기한

구분	보고서등 제출 필요사항	제출기한
해외 직접 투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 회수후 즉시
	신고(보고)내용 변경보고서	변경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
해외 지사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설치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취득(처분) 내용	취득(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도별 영업활동상황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해외 부동산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후 3개월 이내
	해외부동산처분(변경) 보고서	부동산 처분(변경)후 3개월 이내
	수시보고서(계속 보유여부 증명)	요구일로부터 상당일 이내

## 2. 절차편

### 신고(보고)가 필요한 주요 외국환거래 절차



### 제1장 지급등 절차 및 방법

#### I. 지급과 수령

#### II. 지급등의 방법

#### III.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I | 지급과 수령

**지급과 수령의 대전제** :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

## ① 지급등의 절차 (규정 제4-2조)

- 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됨
- 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법, 영, 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을 하기 전에 앞서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함

**Tip!**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지급 및 수령

- ▶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보고(지침상 입증서류 요구)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다.
- 다만,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 있다(규정 제4-2조 제3항)
- ▶ 제재기관의 장은 위반한 당사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 확정시 까지 지급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규정 제4-2조 제4항)

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함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필요 외국환거래 항목

1. 환전영업자(제3-1조 ①)	12.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외국인 투자 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포함) 및 처분(제7-14조)
2. 거주자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지급(제4-1조 ①-1호)	13.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제7-15조)
3.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제4-4조 ①-3호 및 ②)	14.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 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등(제7-18조 ③)
4.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제4-5조 ② 및 ⑥)	15.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제7-22조 ②)
5. 단체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제4-5조 ③)	16.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제7장 제5절 제2관)
6. 해외이주비의 지급(제4-6조)	17.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제9-39 ②)
7.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신청(제4-7조)	18. 국내지사의 설치·운영(제9장 제3절)
8. 상호계산 실시업체(제5-5조)	19.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등(제8-2조)
9. 거주자의 해외예금(제7-11조 ②)	20.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제9-5조)
10.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제7-2조 6호)	21.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참고) ①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재경원 고시 1995-23) ②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재경부 고시 외관41271-270)
11. 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 이하 자본 거래에 의한 수령(제7-2조 9호)	

## ② 거주자의 지급등의 절차 예외(규정 제4-3조)

가.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 중 연간 5만불 이내의 지급등의 경우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지급등을 할 수 있음(확인절차는 필요)

지급등의 절차 예외 (증빙서류 제출없는 지급등 거래)	비고
◎ 대상 : 거주자 (외국인거주자 제외)	
◎ 예외거래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자본거래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합산)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의 절차에 따라 확인 -지정외국환거래은행 지정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의 절차에 따라 확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4.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관련 거래 제외)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기간 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정산의무면제)
5.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 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6.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 국내지사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7.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관련규정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자금의 지급	

## ③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규정 제4-4조)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수령은 규정 §4-2에 따름)

### ■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대상

1.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2.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금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4.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7.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의 지급

□ 다만 외국환은행장 확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Tip!

####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경우

1.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외화
2.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금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급

#### ④ 해외여행경비의 지급(규정 제4-5조)

가.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할 수 있음

□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특히 해외유학생의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 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⑤ 해외이주비의 지급(규정 제4-6조)

가. 해외이주비는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의 경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 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의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 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할 수 있음

○ 단 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한 후 대외송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해외이주비 지급신청자는 세대별 해외이주비(해외이주예정자 포함)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⑥ 재외동포 국내 재산반출 절차(규정 제4-7조)

가.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국내예금·신탁 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 외국환거래법령상 '재외동포'의 개념

-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외국인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포함)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지급증빙서류

- ①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 ②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II 지급등의 방법

※ 다음의 내용은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지급과 수령의 대전제** :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

### ① 상계 및 상호계산(규정 제5-4조, 제5-5조)

#### 가. 양자간 상계 : 외국환은행장에 신고가 원칙(30일 이내 사후보고 허용)

\* 종전에는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에게, 다자간 상계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5.28. 양자간 상계에는 사후보고가 허용됨

#### 나. 다자간 상계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 ■ 상계 신고면제사유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 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 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제7장제7절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9.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선박, 항공기 또는 교통수단등의 이용권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1.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2.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13.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 다. 상호계산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
- 상호계산 대상 거래가 신고를 요하는 경우 신고를 먼저 해야 함
- 대차기 잔액은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한 후 지급 또는 수령 해야 함

Tip!

### 상계 및 상호계산 - 신고(보고) 누락에 주의

#### • 상계-상호계산 비교

	상계	상호계산
정의	양당사자 또는 다수당사자 사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의 일회적 상쇄 후 차액 지급-수령으로 원료	양 당사자 사이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상쇄
공통점	거래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상쇄	
신고기관	양당사자 : 외국환은행(사후보고 가능) 다수당사자 :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 • 신고(보고) 누락에 주의

- 상계 및 상호계산은 은행을 통하는 등 실제 지급등의 과정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신고(보고)를 누락하기 쉬워 주의할 필요

## ②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규정 제5-8조)

- 가.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 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 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가.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

### ③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등(규정 제5-10조)

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급등의 액수에 따라 외국환은행장(미화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 혹은 한국은행 총재(미화 1만불 초과) 앞 신고 사항

□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분산송금 등이 일명 '환치기'(대체송금) 등 불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은행은 특히 주의하여 거래

#### ■ 제3자 지급 신고면제사유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4. 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5. 거주자인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서 법·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 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6.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7.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8.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 계약 증개·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제9-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9.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상환 및 매입 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10.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자금을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11.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취득 대금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본사(본사의 자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12.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3. 외교통상부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국민인비거주자에게 긴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14.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 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 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7. 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18.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 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9. 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등 하는 경우

- 20. 거주자인 통신사업자와 비거주자인 통신사업자간 통신망 사용대가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등을 하는 경우
- 22.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말한다)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 23. 해외광고 및 선박관리 대리대행계약에 따라 동 업무를 대리·대행하는 자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 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25.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한 후 상계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 26. 거주자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급 업무의 대행에 대한 협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27.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비거주자인 납세 대리인을 지정하고, 당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④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규정 제5-11조)

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포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필요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신고면제 사유

1. 외항운송업자와 승객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 해외여행자(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한다.
  -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 (1)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가 대외지급 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2)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나. 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대외지급수단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라. 가목(1)의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만,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 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수출하여 당해 수리 또는 검사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나.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다.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라.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마.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바.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사. 제4-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아.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자.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 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7. 제7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화자금을 직접 예치·처분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해 예금기관이 발행한 외화수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8.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9. 본인명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가.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 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 라.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경우
- 10.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한 환급청구운영 사업자가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 11.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가 당해 법인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12. 거주자가 제9장제1절, 제2절,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 대외 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 13.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 14. 제3장제2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나. 소액에 한하여 증권사·상호저축은행·카드사 및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지급등이 가능(규정 2-11조, 제2-14조, 제2-22조, 제3-4조)

#### 〈지급등이 가능한 소액의 기준〉

- 증권사·상호저축은행·카드사 : 건당 5천불, 지급 및 수령 누계 동일인 연간 5만불
- 소액해외송금업체 : 건당 3천불, 지급 및 수령 누계 동일인당 연간 3만불

○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사·상호저축은행·카드사인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록을 마친 정식 소액해외송금업체인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소액해외송금업체 등록 여부 조회 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업무자료→외국환→소액해외 송금업 조회)

### III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①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등(규정 제6-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또는 증권(지급수단등)을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규정 제6-2조)

구 분	신고 대상 거래
신고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만불 이하 지급수단의 수출·수입</li><li>• 외국환은행의 환전용 내국통화 수출</li><li>•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신고를 한 경우</li><li>• 자본거래 신고를 한 자의 신고된 바에 따른 기명식증권의 수출입 등</li></ul>
관할세관장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의 휴대 수입</li><li>• 국민인 거주자의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의 휴대 수출</li><li>• 기타 지급수단등의 수출입</li></ul>
외국환은행장 확인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부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의 미화 1만불 초과 대외지급 수단의 국내 취득</li></ul> <p>※ (예)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미화 1만불 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p>

## 2. 절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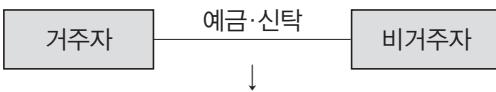
### 신고(보고)가 필요한 주요 외국환거래 절차



## 제2장 자본거래

- I .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II .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III .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IV . 증권의 발행 및 증권의 취득
- V . 파생상품거래
- VI . 기타의 자본거래

# I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의무	예금거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단,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해외 송금시에는 한국은행 신고)
	신탁거래	한국은행
보고 의무	해외입금보고	미화 1만불 초과 또는 대외채권 미회수시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잔액현황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 ■ 해외예금 신고면제사유

-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 거주자가 공공기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 부터의 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국민인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 예금 또는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거주자가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와 관련하여 외화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거주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외국 소재 증권예탁기관 또는 금융 기관에 예탁·보관하고 동 예탁·보관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CLS은행 또는 외환 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원화 포함)예금 또는 원화예금 을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이미 취득한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외화예금신고를 한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에서 취득한 자금을 예치 하는 경우
- 규정 제7-1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 거주자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해외에서 채권을 회수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나 하는 경우

## ① 해외예금

### 가. 신고의무(규정 제7-11조 제2항, 3항)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야 함
- 다만, 거주자(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해외 건설업자 등 제외)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야 함

### 나. 신고면제사유(규정 §7-11①)

- 예외적으로 ① 외국에 체재하고 있거나, ② 다른 거래에 수반되는 해외 예금거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다. 보고의무(규정 §7-12)

- 해외입금보고 :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또는 대외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금한 경우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
- 잔액현황보고 : 연간입금액 또는 연말잔액이 일정 금액(개인은 미화 10만불, 법인은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1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 ② 해외신탁

### 가. 신고의무(규정 §7-11③)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이 해당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신고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나. 보고의무(규정 §7-12)

- 잔액현황보고 : 연간입금액 또는 연말잔액이 일정 금액(개인은 미화 10만불, 법인은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 II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① 금전대차



차입	외화	영리법인(회사) : 외국환은행 비영리법인 및 개인 : 한국은행
	원화	외국환은행
대출	한국은행	

### 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규정 제7-14조)

#### □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규정 제7-15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규정 제7-16조)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단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종전에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모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5.3. 해외직접투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1년 미만의 단기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도록 변경
-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 다. 신고면제사유(규정 제7-13조)

- 예외적으로 ① 거주자간의 외화금전대차, ②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의 원화금전대차, ③ 재외공관근무자, 해외 체재자 및 해외 유학생의 생활비 및 학자금 충당 목적의 금전대차,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에 따른 차관, ⑤ 해외부동산 취득에 수반되는 금전대차 등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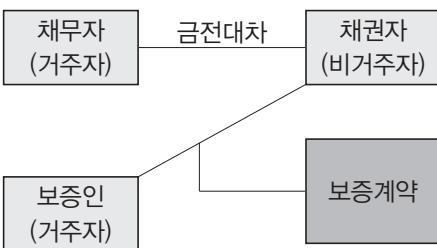
- 4.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 5.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근무자, 그 동거가족 또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그 체재함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 6.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 또는 일일대출(over-night credit)을 받는 경우
- 7.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39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8.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을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일중(Intra-day) 원화신용공여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Over-night) 신용공여를 받는 경우

#### ■ 금전대차 신고면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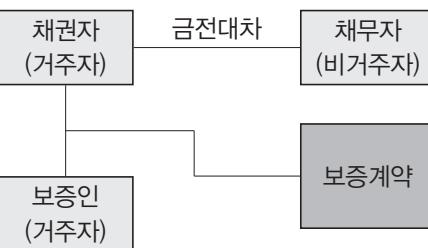
1.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 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채무보증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 <보증계약에 대한 신고>

외국환은행	금투업자 및 시설대여회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또는 주채무 계열 회사간 보증 등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신고대상 외의 보증

가. 신고의무(규정 제7-18조, 제7-19조)

###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 ①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그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외국의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 ③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④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1년 초과) 외화자금차입 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제공자가 차입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입자가 대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

⑤ 교포등에 대한 여신에서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불 이내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되, 여신을 받는 자의 명의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 금융기관등을 거래금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Tip!

### 채무보증 신고누락에 주의

- ▶ 채무보증은 보증계약 체결하기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사전신고사항(규정 제7-18조, 제7-19조)
- ▶ 실제 지급등은 보증계약 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보증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때 문제되므로 채무보증 관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채무보증 계약 체결 전 사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나. 신고면제사유(규정 제7-17조)

□ 예외적으로 ① 거주자간의 외화보증, ② 다른 인정된 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③ 무역거래와 관련된 보증, ④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의 원화보증 등은 신고가 면제됨

### ■ 채무보증 신고면제사유

1. 거주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2. 거주자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그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에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3.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해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5. 거주자가 다음의 보증을 하는 경우
  - 가. 거주자의 원화·외화자금차입 계약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다만,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나. 거주자가 규정 제4장에서 규정한 지급(제4-5조 내지 제4-7조 제외)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 다. 거주자가 인정된 임차계약을 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화보증을 하거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의 시설대여회사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 라. 거주자의 약속어음매각과 관련하여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 마. 규정 제2-6조제1항단서에 따라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7.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거주자 제7-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10.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12. 제7-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 III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① 거주자간의 거래

##### 가.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규정 제7-20조)

- 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는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다만, ① 거주자간에 동일자 기준 미화 5천불 이내에서 외화 등 대외 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경우, ②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경우 등은 신고의무 면제
  - ※ 영리의 목적으로 영업을 위해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경우 환전업 등록을 하여야 함(외국환거래법 제8조)
- 거주자간에 외화를 대가로 한 물품 혹은 채권의 매매, 외화·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의무 없음
  -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용역거래는 무역거래에 해당하나, 거주자간의 외화 용역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 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규정 제7-21조)

- 거주자간의 외국 부동산 및 시설물의 이용·사용에 관한 회원권 매입 거래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회원권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됨

####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규정 제7-21조)

##### 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부동산 및 시설물의 이용·사용에 관한 회원권 매매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회원권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됨

##### 나.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신고면제사유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대외지급수단, 물품 또는 채권의 거래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사항

##### 다. 신고면제사유

- ①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등이 해외 체재하는 거주자와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자기앞수표 또는 내국통화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② 해외 체재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 매매를 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등

##### ■ 대외지급수단, 채권 매매계약 등 신고면제사유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 한다)이 해외에 체재하는 거주자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또는 내국통화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 2.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한다)가 비거주자와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 3.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 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 4.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 5. 거주자가 국내외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 6.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

라. 제2-6조(은행의 대출로서 거주자가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한 경우), 제7-13조 제4호<sup>1)</sup>, 제7-16조(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제7-17조제9호<sup>2)</sup>, 제7-45조 제11호<sup>3)</sup> 및 제18호단서<sup>4)</sup>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자금의 대외 지급. 다만, 재외동포가 제2-6조 또는 제7-45조제18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원화자금을 대외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 1) 제7-13조 제4호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 2) 제7-17조 제9호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 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 3) 제7-45조 제11호 :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일부기타자본거래경우
- 4) 제7-45조 제18호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여 내국통화로 보증금 지급하는 경우

마. 규정 제2-3조 제1호 나목 및 제2호(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의 범위를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각(규정 제2-3조)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가. 제7-6조제1항제2호<sup>\*</sup>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지급.  
다만,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적용  
<sup>\*</sup>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내국통화로 한 예금·신탁거래

나.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교포 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에 따른 대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담보·보증 제공 후 국내 재산 처분대금의 지급

## IV 증권의 발행 및 증권의 취득

### ① 증권발행

거주자의 증권발행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발행장소	통화	신고 여부	발행장소	통화	신고 여부
국내	원화	적용 대상 아님	국내	원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화	신고 예외		외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국	원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국	원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화	외국환은행장 등에 신고 (거주자의 외화차입 준용)		외화	적용 대상 아님

국내증권시장과 해외증권시장간에 증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증권상장  
→ 최초 상장시점 1회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가. 신고의무(규정 제7-22조 및 제7-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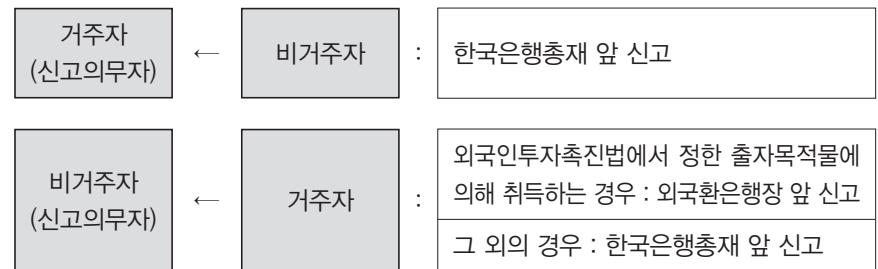
##### □ 거주자의 증권발행

-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에 관한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를 준용함
-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 포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 포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② 증권취득



#### ※ 주의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권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에 해당하나, 외국환거래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취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 거주자간의 (외화)증권양수도는 규정 §7-43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해외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변경보고를,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함

#### 가. 거주자의 증권취득

※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정 §9-1 내지 §9-9에 의함

##### □ 신고의무(규정 제7-31조 제2항)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단,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함

## □ 신고면제사유(규정 제7-31조 제1항)

- 예외적으로 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②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상속·유증·증여받는 경우, ③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이 합병되어 그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④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의 원화증권 매매 또는 ⑤ 대물변제, 담보권 행사로 인한 외화증권 취득 등의 경우에 신고의무가 면제

### ■ 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면제사유

1.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신하여 합병 후 존속·신설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6. 거주자가 국민인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내국통화로 취득하는 경우
7.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인 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국내인수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9. 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원활화를 위하여 미화 5만불 이하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부여된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제7-3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제7-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 절차

- ① 기관투자자 이외의 일반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함
- ②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송금하여야 함
- ③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매분기별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 외화증권투자현황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나.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 □ 신고의무(규정 제7-32조 제2항, 제3항)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비등록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비해당)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가령, 거주자가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 □ 신고면제사유(규정 제7-32조 제1항)

- 예외적으로 ①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상속·유증\* 받는 경우, ④ 국민인 비거주자가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⑤ 대물변제, 담보권 행사 및 출자전환 등으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을 증여받는 경우는 신고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면제사유

1.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5.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6. 비거주자가 제2-5조, 제2-10조 및 제7-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부여된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국내에서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바에 따라 만기전 상환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또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한 국내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9.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0. 비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1. 제7-31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 제7-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취득 절차

- ① 외국인투자는 국내원화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본인명의 투자전용계정(투자전용대외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
- ②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투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등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
- ③ 외국환은행장 및 투자중개업자는 증권투자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 V 파생상품거래

## ① 한국은행총재에 신고(규정 제7-40조)

- 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라고 하더라도 ① 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②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③ 파생상품거래를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여야 함

##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2.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파생상품거래를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이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4.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 VI 기타의 기본거래

## ① 거주자간 기타 기본거래

### 가. 거주자간 기타 기본거래의 적용범위(규정 제7-43조)

- 거주자간의 외화표시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조합·사용대차·채무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
- 거주자간의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외화표시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거주자간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 단,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제9장의 규정에 따름

### 나. 신고의무

- 원칙적으로 거주자간 기타 기본거래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다만, 담보·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채무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

##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기본거래

###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기타 기본거래의 적용범위(규정 제7-44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조합·사용대차·채무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
  -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채무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 계약에 관한 규정 및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을 적용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 나. 신고의무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규정 제7-46조 제1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체결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규정 제7-46조 제2항)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및 신고면제사유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기타 자본거래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다만,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통합관리 개시전에 신고하여야 함

#### 다. 보고의무(규정 제7-46조 제4항, 제5항)

-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거주자는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자금운영현황 등을 다음 연도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자는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신고면제사유(규정 제7-45조 제1항)

1.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3. 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공기엔진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주요부품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제9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신고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
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7. 비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신탁·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법적절차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납입하거나 예치금에 같음 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9.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제7-4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13.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제7-13조제6호의 일중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4. 기관투자가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국증권대여기관(Securities Lending Agent)을 통하여 대여하는 경우
- 14-1.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15. 제7-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계약 만료 전에 수출자유 지역내에서 당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는 경우
16.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외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7.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이 수반된 현지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을 위하여 당해 거주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8.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다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통화에 한함
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과 결제 관련 약정(손실부담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와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1.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22.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함
2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
24.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 하는 경우

### ③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범위(규정 제7-47조)

-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신고의무(규정 제7-48조 제2항)

-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7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나. 신고면제사유(규정 제7-48조 제1항)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포함)를 하는 경우
2.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거래(자본거래 포함)를 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하거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5.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 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제7장제6절제3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하는 경우
9.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10.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 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1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원화가 개재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 가.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 또는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다른 비거주자간의 결제관련 약정
  - 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고객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거래
  - 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결제유동성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In/Out Swap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 라. 유동성공급약정에 따른 CLS은행과 비거주자(Liquidity Provider)간의 현물환, 선물환 또는 스왑거래
  - 마.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가 CLS은행 또는 회원은행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수령하는 거래
  - 바.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손실부담약정 체결
  - 사.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고객인 비거주자와의 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12. 비거주자가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및 원화신탁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2. 절차편

### 신고(보고)가 필요한 주요 외국환거래 절차



## 제3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 I . 해외직접투자

### II . 해외(국내)지사

### III . 해외부동산 취득

### IV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I 해외직접투자



## ①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

가. 해외직접투자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설립 중 법인 포함)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함

### ① 증권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관계를 수립한 때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

### ② 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1년 이상) 금전대여

\* 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제7~16조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8조)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li>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원의 파견</li> <li>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li> <li>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li> <li>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li> </ol> </li> <li>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li> <li>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li> </ol>

## ② 신고의무

### 가. 신규(증액)신고의무(규정 제9-5조 제1항)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를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단,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음
-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음

## 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명신고

- 수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괄호 부분)
- 동일 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서는 투자자별로 작성) 이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많은 거주자(투자비율이 같은 경우 자본금 규모가 큰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투자자 각각의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 Tip!

#### 은행을 통한 송금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외직접투자도 신고 필요

- ▶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외직접투자의 예시
  - 외화를 휴대반출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상장된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대부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로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③ 보고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 가. 변경보고의무(규정 제9-5조 제2항)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 다만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할 필요

### Tip!!

####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 ● 투자내용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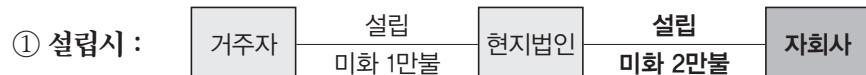
- 현지법인의 자회사·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자의 지분율 변동
- 대부투자신고 후 1년 이내 자금회수\*
- \*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보고로 처리

##### ● 투자주체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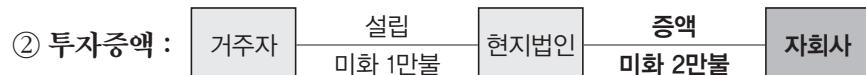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즉시 변경보고하고,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를 하여야 함
- \* (예외) 해외직접투자자가 주체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 당해 기업의 주체권은행, 주체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여신최다은행  
→ 양도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양수고신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변경보고), 양수인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위 양수도신고(보고)서 혹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신규 신고)

## □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변경보고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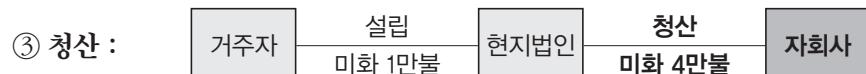
-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투자금액 변경, 청산은 해외직접 투자자의 변경보고 의무사항에 해당



→ 자·손회사 관련 변경보고 의무 발생('18.1.1.부터 외국환거래규정에 변경보고의무 사항으로 규정)



→ 자·손회사 관련 변경보고 의무 발생('18.1.1.부터 외국환거래규정에 변경보고의무 사항으로 규정)



→ 자·손회사 관련 변경보고 의무 발생('18.1.1.부터 외국환거래규정에 변경보고의무 사항으로 규정)

### ■ <참고> 대법원 2017. 6.15. 선고 2015도5312 판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설립 등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로, 이에 따라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현지 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변경보고 대상으로 개정되었음

## 나. 사후보고의무(규정 제9-9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제출기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청산보고서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금회수 후 즉시

## ■ 투자규모별 신고등 의무

구 분	미화 100만불 이하	미화 100만불~200만불	미화 200만불 초과
신고의무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보고의무	① 증권취득보고 ② (면제) ③ 청산보고	① 증권취득보고 ② 투자현황표 ③ 청산보고	① 증권취득보고 ② 연간사업실적보고 ③ 청산보고
회계감사	회계감사 불요	회계감사 불요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보고서 제출
회수의무	청산 즉시 잔여재산 회수	청산 즉시 잔여재산 회수	청산 즉시 잔여재산 회수

## 다. 휴·폐업 등에 따른 보고의무 면제(규정 제9-9조 제1항 단서)

-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등의 기간 중 보고의무가 면제

#### 라.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의무(규정 제9-9조 제2항)

- 외국환은행장은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마. 사후관리 면제보고(규정 제9-9조 제2항 단서)

-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④ 투자금 및 분배잔여재산 회수의무(규정 제9-4조, 제9-6조)

가.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신고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 및 과실을(투자 사업 청산 시 분배잔여재산)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절차 준수 필요

### 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가. 역외금융회사의 개념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 회사 및 계약형태 포함)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 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에 준하는 투자로 총투자금액(부채성증권 매입 등)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이상인 경우에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 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규정 제9-15의2조)

-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및 그 현지법인 등(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변경(폐지)보고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폐지)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마. 분기별 투자현황 보고의무(규정 제9-15의2조 제5항)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II 해외(국내)지사

### ① 신고의무(규정 제9-18조)

가.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외 지점	가.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나.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해외 사무소	가. 공공기관 나. 금융감독원 다.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라.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마. 다목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바.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아.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자.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차.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카.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 ■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의 구분

-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을 수행

### ② 해외지사의 운영

#### 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규정 §9-19)

-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나,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

- 해외지사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기금 또는 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나. 해외사무소의 경비(규정 §9-20)

-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함

### ③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및 결산보고

#### 가.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규정 §9-22)

- 해외지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①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제외

##### ②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 \* 단,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 제외

##### ③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 나. 해외지점의 결산보고(규정 §9-23)

-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차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①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② 국내회수 후 외국환은행에 원화로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또는 ③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 운용하여야 함

### ④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 가. 해외지사의 설치완료 및 영업활동 보고 등(규정 §9-25)

-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
-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취득·처분내용을 보고
-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5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 나. 해외지사의 변경 및 폐쇄(규정 §9-24)

-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
- 해외지사 폐쇄시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 단,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III 해외부동산 취득



#### ① 신고의무(규정 제9-39조)

가.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 등'이라 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규정 제9-39조 제2항)

- 주거 이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 보증금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Tip!

#### 내신고수리 제도

-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의 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거나 혹은 그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규정 제9-39조 제4항)

-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

#### 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면제사유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7.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국민연금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당해 법령에 따라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유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가.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9.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10.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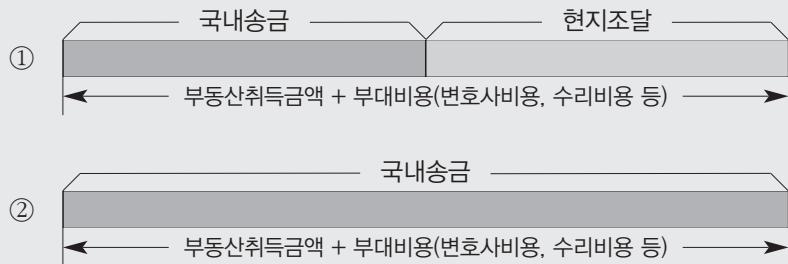
## ② 변경신고의무(규정 제9-1조)

가.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Tip!

### Mortgage Loan

- 아래 ①과 같이 부동산취득금액에 일부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현지의 금융기관(비거주자)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계약(자본거래) 신고의무는 면제됨(규정 제7-13조 제7호)
  - 다만,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현지조달액 및 현지금융기관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제출 후 현지조달액이 감액 등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해외부동산취득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제출 후 해외에서 체재하는 동안 생활비 등의 사용 목적으로 해당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액을 증액한 경우 이는 신고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은행총재 앞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③ 신고수리요건(규정 제9-38조)

- ①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 등이 아닐 것
- ②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 ③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 ④ 보고의무(규정 제9-4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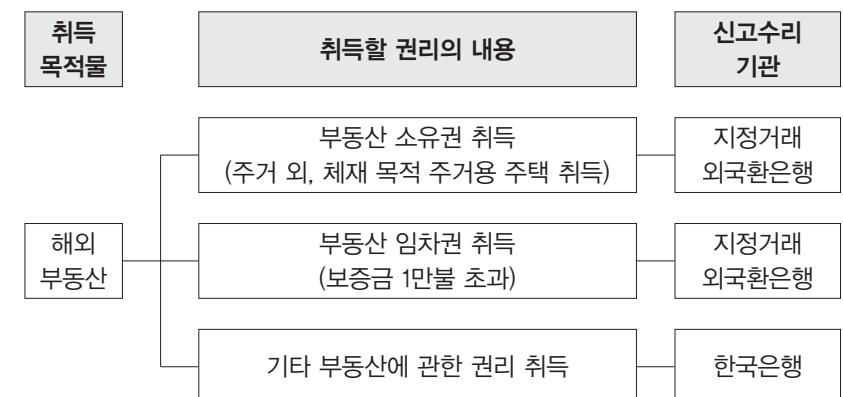
가.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제출기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후 3월 이내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3월 이내 처분대금 수령시 수령하는 시점
수시보고서(계속 보유여부 증명)	요구일로부터 상당일 이내

## ⑤ 회수의무(규정 제9-39조)

- 가. 해외부동산취득자가 그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투자원금 및 과실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이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절차 준수 필요

### ■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수리기관



## IV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① 신고의무(규정 제9-42조)

가.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규정 제9-42조 제2항)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혹은 신고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신고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규정 제9-42조 제3항)

- 신고면제사유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면제사유

- 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②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③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④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⑤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나. 매각대금의 해외지급(규정 제9-43조)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대외지급수단 매입 후 지급

Tip!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관련 주의사항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대금에 임대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에는 동 비거주자가 대출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규상 요구되는 신고 등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

## I 현지금융

### 2. 절차편

#### 신고(보고)가 필요한 주요 외국환거래 절차



#### 제4장 현지금융

##### ① 현지금융의 개념(규정 제1-2조 제42호)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 제외) 및 그 현지법인등\*이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함

\* 거주자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 현지금융은 차입자금의 국내유입 혹은 국내예치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규정 §7-14조에 따른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와 구별됨

##### ② 현지금융의 주체

가. 거주자 : 개인의 경우에는 제외

나. 거주자의 해외지점 : 제9-19조의 규정에서 정한 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은 제외

다. 거주자의 현지법인 :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

##### ③ 신고의무(규정 제8-2조)

가. 거주자·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담보제공 유무에 따라 해당 신고의무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을 받아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 신용공여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총액 보증한도를 정하여 사전에 포괄신고 가능

※ 단,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가능금액은 보증한도총액을 신용공여수혜 현지법인의 수로 나눈 금액의 2배 이내임

차입주체	보증·담보제공	신고의무자	신고기관
거주자의 현지금융*	보증·담보제공이 없는 경우	당해 거주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본인 혹은 외국환은행의 보증·담보제공		
	다른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	보증제공자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보증·담보제공이 없는 경우	신고면제	
	외국환은행의 보증·담보	당해 거주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당해 거주자 혹은 다른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	보증제공자	

※ 단, 거주자가 외화증권발행방식으로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사항

#### ④ 보고의무(규정 제8-4조)

가. 현지금융을 받은 거주자 혹은 현지금융을 받은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는 현지금융의 차입·상환 반기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나. 현지법인등이 보증·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아 신고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그 차입주체가 해외지점,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현지법인 또는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인 때에는 동 보고의무가 적용됨

#### ⑤ 변경신고의무 및 사후관리의무(규정 제8-2조)

가. 현지금융을 통해 차입한 자금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차입원리금의 상환 여부에 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나.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법인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음

## 참고 외국환거래 위반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 ① 신고등 절차

□ 거주자가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 앞 확인을 통해 신고(수리)대상거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www.bok.or.kr](http://www.bok.or.kr) → 외환·국제금융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www.mof.go.kr](http://www.mof.go.kr))

○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수리)업무는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관련 실무는 권역별 관련부서에서 담당

### ② 위규시 신고 및 제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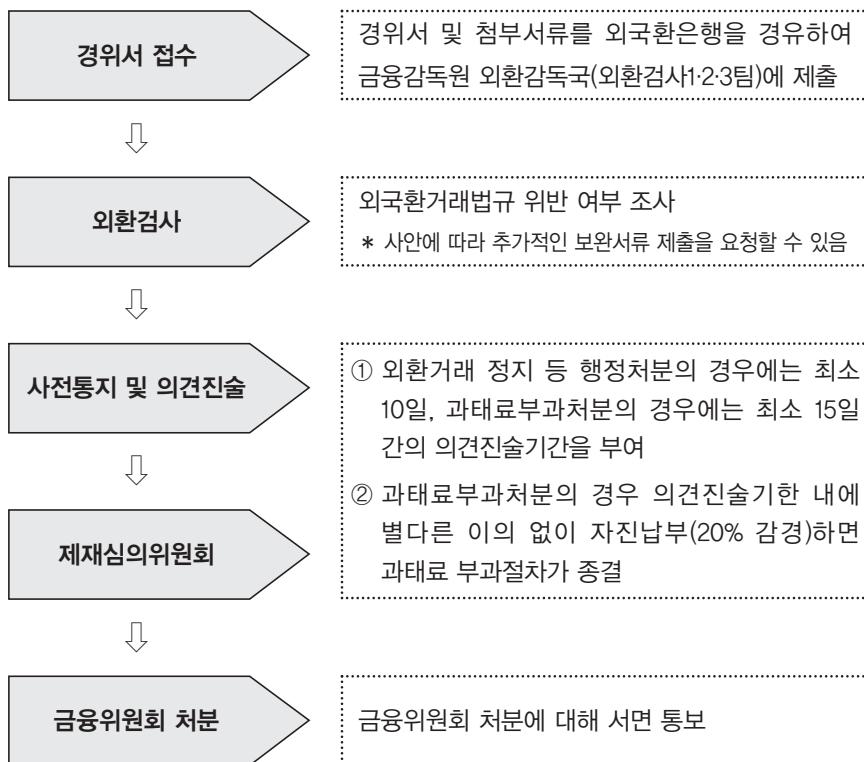
#### 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조사

□ 금융감독원의 혐의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국세청 등)의 위반혐의 제보, 외국환거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외국환거래에 대해 조사

○ 위반자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외환조사1·2·3팀)에 경위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위반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위반여부 확인

\*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 연도 결산서류 및 기타 소명자료 등

## 외환검사 및 행정처분 절차



※ '경고' 처분은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조치

### 나. 제재내용

#### (1) 행정처분

##### 【경고】

□ 기획재정부장관은(시행령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위임) 다음의 경우에 '경고' 처분(법 §19①)

①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반금액 1만달러\* 또는 2만달러\*\* 이하의 거래로서 절차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5조(지급절차),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위반인 경우

\*\*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의 위반인 경우

##### 【거래정지 또는 허가취소】

□ 최근 5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처분(법 §19②)

##### 【과태료】

□ 기획재정부장관(시행령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위임)은 다음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32①)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증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 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 거래를 한 자

※ 제16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금액 : 25억원이하(초과는 별칙대상\*)

제1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금액 : 10억원이하(초과는 별칙대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32②)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32①)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32①)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2) 벌칙(법 §27, §28, §29 및 §31)

-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의 처벌

(3) 몰수·추징(법 §30)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귀금속·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가능

(4) 경과조치(법 부칙 제6조 제3항)

- '17. 7. 18. 이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름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재유형	제재내용	관련법규	처분
행정처분	거래정지 경고 또는 관련외국환거래 정지 (1년이내)	법 제19조	금융위원회
	과태료 최고 1억원 또는 최고 1천만원	법 제32조	금융위원회
벌칙	징역·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법원
	몰수·추징 외환, 증권,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추징	법 제30조	법원

### ③ 불법 외환거래 신고센터

- 불법 외환혐의 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직접 입력

\* www.fss.or.kr

(업무자료 → 외국환 → 불법외환거래신고센터)

- 신고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는 엄격히 비밀보장

- 외화밀반출, 수출입관련 불법 외환거래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125)로 신고

\* www.customs.go.kr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밀수신고센터)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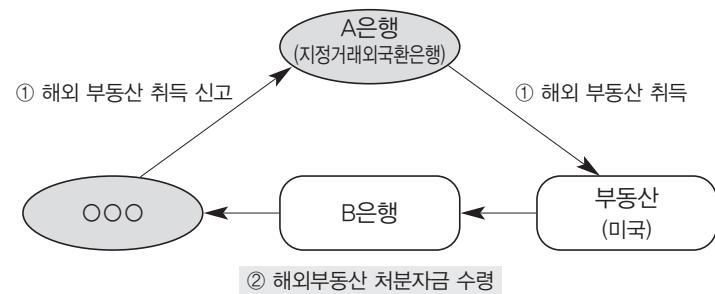


### 제1장 지급등 절차 및 방법

#### I. 지급과 수령

① FX마진거래시 해외투자중개업자와 직접거래		②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금 수령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	
위 규 내 역	<p>거주자 OOO는</p> <p>① 해외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후,      ② XX은행을 통해 '11. 12월~'13. 9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7만 6천달러의 증거금을 송금하고      ③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않고 F/X 마진거래를 함      ⇒ 지급등 절차 위반</p>	<p>거주자 OOO는</p> <p>①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일본 현지법인에 해외 직접투자를 하였으나,      ② 일본 현지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배당금을 수령함에 있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국내의 다른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      ⇒ 지급등 절차 위반</p>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 위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4조)</li> <li>「외국환거래규정」제4-1조는 국내법령에 반하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한 지급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등 절차 위반</li> <li>거주자가 해외시장에서 F/X마진거래를 하려면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함</li> </ul>	
은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안내</li> <li>해외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사이트 폐쇄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수적으로 안내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행이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경우 타행으로 관련신고가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더라도 지급처리할 수 없음</li> <li>외화자금 수령시 동 자금의 수령사유를 반드시 확인</li> </ul>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 ③ 해외부동산 처분 자금 수령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



#### 위 규 내 역

거주자 OOO는

- ① A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 ②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B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면서 해외부동산 처분자금임을 밝히지 아니하였음

⇒ 지급등 절차 위반

- 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 취득 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처분자금의 수령 역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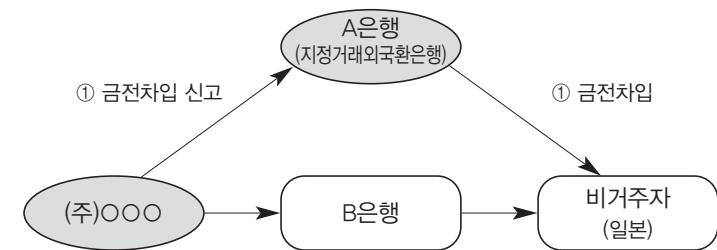
#### 유 의 사 항

-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행이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경우 타행으로 관련신고가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더라도 지급처리할 수 없음
- 외화자금 수령시 동 자금의 수령사유를 반드시 확인

####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 ④ 금전대차 상환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



####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OOO는

- ① A은행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하여 금전대차 신고를 하고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였는데,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B은행을 통하여 물품수입대금 명목으로 금전대차 원리금을 상환하였음

⇒ 지급등 절차 위반

#### 거 래 당 사 자

- 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함
- 지급 또는 수령시에 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급등 절차 위반에 해당함

#### 유 의 사 항

-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행이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경우 타행으로 관련신고가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더라도 지급처리할 수 없음
- 외화자금 수령시 동 자금의 수령사유를 반드시 확인

####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 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현지법인 운영자금 타인 명의 송금등

위 규 내 역	<p>① 해외직접투자 신고 X      ② 해외 현지법인 설립      ③ 직원명의로 운영자금 분산 송금</p> <p>현지법인 (카자흐스탄)</p>
	<p>거주자 OOO는</p> <p>①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카자흐스탄에 자본금 1달러인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p> <p>② 회사 임직원 1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현지법인의 단기운영자금 50만 달러를 분산 송금하였음</p> <p>⇒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및 지급등 절차위반</p>

거래 당 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당사자는 실지명의로 송금을 하여야 하며</li> <li>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의 송금이더라도, 실질이 해외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가 필요</li> </ul>
-------------------	---

유 의 사 항 은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은 송금의 수취인이 해외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할 가능성(금전대차, 해외직접투자)이 높으므로 송금사유를 재확인</li> <li>특히, 현지법인에 대한 송금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송금인과의 관계 확인</li> <li>차명에 의한 분산송금임을 인지한 경우 송금인에게 편법송금에 대한 경고 및 혐의거래 보고 등 동 거래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li> </ul>
----------------------------	---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9-5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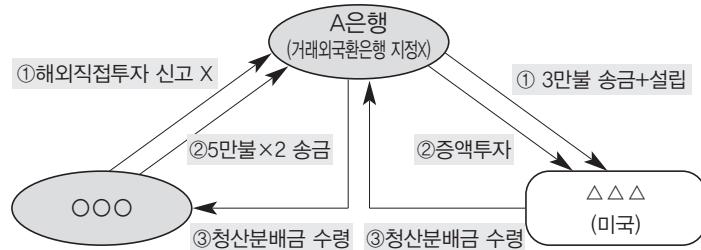
## ⑥ 증권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

위 규 내 역	<p>① 투자자금 송금      ② 지분 11% 취득      ③ 매각자금 출금(총 50차례)      ④ 매각자금 송금</p> <p>A은행 (지정거래외국환은행)</p> <p>독일 상장법인</p> <p>OOO</p> <p>B은행 (OOO계좌)</p> <p>B증권</p> <p>해외주식시장</p>
	<p>거주자 OOO는</p> <p>① 독일 소재 상장법인의 지분 11%를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 B증권사를 통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는데</p> <p>② B증권사를 통해 총 60회에 걸쳐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p> <p>③ 매도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B은행으로 50차례 출금</p> <p>⇒ 지급등 절차 위반</p>

거래 당 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투자자금의 지급등을 해당은행을 통하여 하여야 함</li> <li>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출금하여 지급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li> </ul>
-------------------	--

유 의 사 항 은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상장법인주식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가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자금의 지급등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상세히 안내</li> </ul>
----------------------------	--

## ⑦ 증빙서류 제출 면제 범위 내 송금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위규 내역

거주자 OOO는

- ①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해외 현지 파트너에 3만달러를 송금하여 현지 법인 △△△을 설립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았고
- ② 이후 추가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없이 5만달러씩 2차례 현지법인 앞으로 송금하여 자본금을 증액하였으며
- ③ 해당 현지법인 청산 후 청산자금 10만달러를 수령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및 지급등 절차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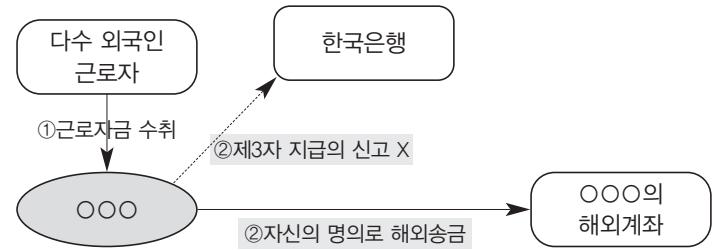
- |               |   |
|---------------|---|
| 거래당사자<br>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5만달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이 가능하더라도 송금한 자금이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 자금을 송금해야 함</li> <li>•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함에 유의</li> </ul> |
|               |   |

- |            |   |
|------------|---|
| 은행<br>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은행은 증빙서류미제출송금이더라도 지급사유를 항상 확인해서 신고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신고절차 안내</li> <li>• 청산자금이 들어올 때, 현지회계법인의 가치평가확인서 등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다른 자본거래에 자금이 이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자금정리</li> </ul> |
|            |   |

###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 4-3조, 제9-5조

## ⑧ 외국인 근로자의 제3자 지급 신고 누락



### 위규 내역

외국인 거주자인 OOO는

- ①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자금을 수취하여,
- ② 총 2만불을 자신의 명의로 해외송금하였으나 증빙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는 연간 5만불 이내라는 이유로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제3자 지급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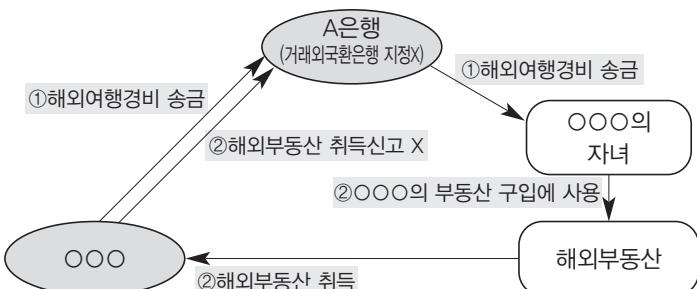
- |               |  |
|---------------|--|
| 거래당사자<br>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장(미화 5천불 초과~미화 1만불 이내) 또는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불 초과) 앞 제3자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함</li> </ul> |
|               |  |

- |            |  |
|------------|--|
| 은행<br>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장에 자금의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간 5만불 이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이 허용됨</li> <li>• 국내에서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등은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li> </ul> |
|            |  |

###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5-10조, 제5-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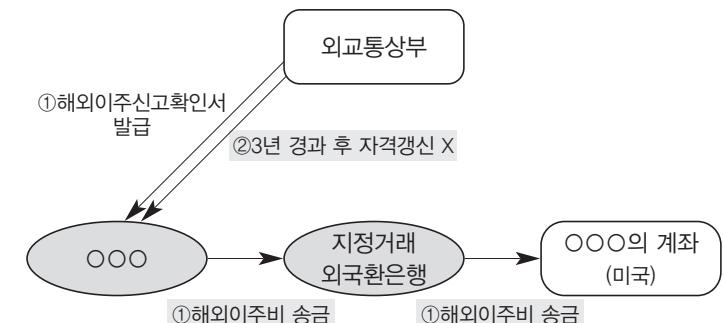
## ⑨ 해외여행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신고누락



위규  
내역

- 거주자 ○○○는
- ① 유학중인 자녀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 ② 동 자금으로 본인명의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하지 않음
- ⇒ 지급등 절차 위반 및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누락

## ⑩ 해외이주비의 대외송금 기한 연장 없이 송금



위규  
내역

- 거주자 ○○○는
- ①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고자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지 3년이 지난 후에
  - ②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지 않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100만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하였음
- ⇒ 지급등 절차 위반

거래  
당  
사  
자

- 해외유학생에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목적이 해외부동산 취득인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관련자금을 송금하여 취득해야 함

거래  
당  
사  
자

-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함
- 해외이주자 인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교부(재외공관)에 이주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여 대외송금 기한을 연장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은  
행

- 유학생 신분에 비해 과도하게 송금되는 경우 용도 이외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내역을 확인 요망
- 유학경비 외의 사용목적이 확인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대상이라면 관련 절차를 안내

유  
의  
사  
항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9-39조

은  
행

- 해외이주비 지급시점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 해외이주비 송금신청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 서장의 자금출처확인서 징구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 ⑪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따른 외화송금시 주의사항

위 규 내 역	<pre> graph LR     OOO([OOO (비거주자)]) -- ①국내부동산 취득신고 X --&gt; FXBank[외국환은행]     FXBank -- ②아파트 매각 --&gt; Apartment[아파트 (한국)]     Apartment -- ①미국 송금자금 20만 달러로 취득 --&gt; FXBank     FXBank -- ②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에 의한 해외송금 시도 --&gt; Apartment   </pre> <p>재외동포인 비거주자 OOO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없이 20만 달러를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li> <li>② 동 아파트를 처분한 뒤 처분대금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던 과정에서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누락사실을 확인</li> </ul> <p>⇒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 누락</p>
	<p>거래 당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제출</li> <li>•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총재 앞 사전신고 사항에 해당</li> </ul>
유 의 사 항	<p>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을 받는 경우 기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등이 필요한 거래 관련 자금인지 확인하고, 법령상 신고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및 해당 신고 절차 등 적법절차를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9-39조

## 3. 위반사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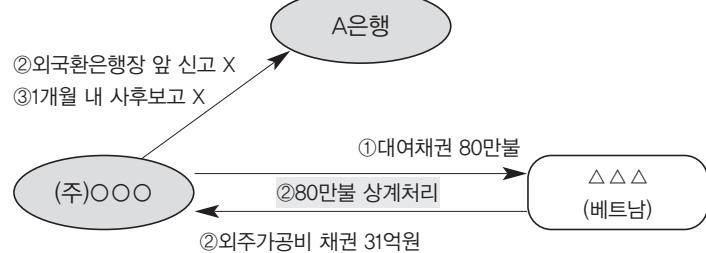
### 유형별 위반사례



### 제1장 지급등 절차 및 방법

#### II. 지급등의 방법

## ⑫ 양자간 상계의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누락



위규  
내역

- 거주자 (주)○○○는
- ① 한국은행총재 앞 금전대차 신고 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 △△△에 80만 달러를 대여하였는데,
  - ②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없이 차주인 △△△에 상환하여야 할 외주 가공비 미지급금 채무 31억원 중 8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 ③ 상계 후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음
- ⇒ 양자간 상계의 사전신고 혹은 사후보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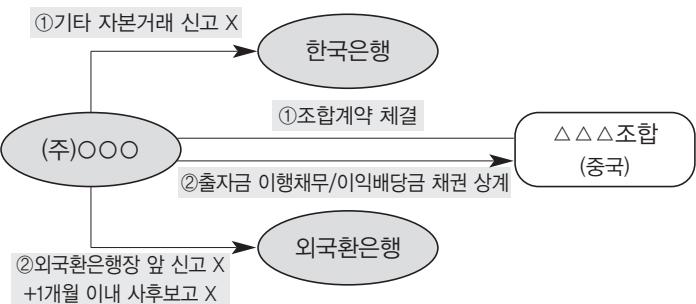
- 거래  
당  
사  
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 당사자간 상계를 하는 경우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사전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은행
-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 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 양자간 상계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 혹은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사항임을 안내
  - 고객으로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등 증빙서류 확인시 상계관련 결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 ⑬ 조합과의 상계신고 및 사후보고 누락



위규  
내역

- 거주자 (주)○○○는
- ①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비거주자인 △△△조합에 1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② 이에 △△△조합의 이익배당금 10만 달러와 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 상당액 10만 달러를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음
- ⇒ 기타 자본거래 신고 누락, 양자간 상계의 사전신고 혹은 사후보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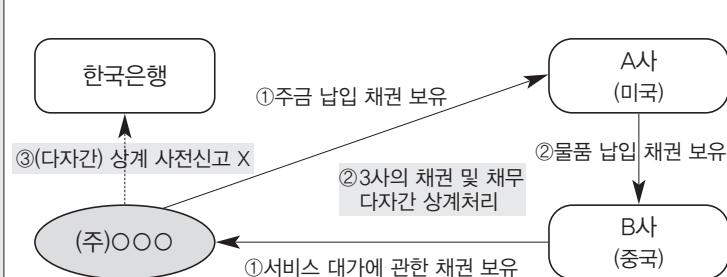
- 거래  
당  
사  
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 당사자간 상계를 하는 경우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사전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은행
-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 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 양자간 상계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 혹은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사항임을 안내
  - 고객으로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등 증빙서류 확인시 상계관련 결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 ⑯ 다수당사자 간 상계 신고누락



###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는

- ① 미국 소재 A사에 보통주 1,500주를 발행한 것에 대한 주금납입채권을 보유하고 중국 소재 B사에 서비스 대가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 ② A사도 B사에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 ③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3만불 범위에서 3사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였음

⇒ 다자간 상계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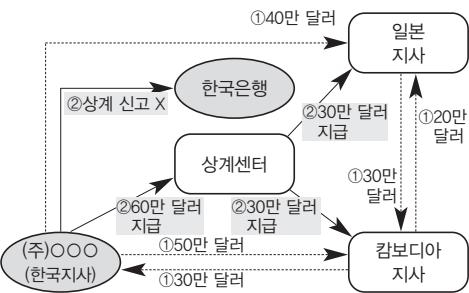
-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 당사자 간 상계를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사항이며
-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사항임

- 외국환은행은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함을 안내
- 고객으로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등 증빙서류 확인시 상계관련 결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

### 관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 ⑰ 다수당사자 간 상계시 상계센터를 이용한 경우 신고 누락



###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는

- ①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로 일본 본사, 캄보디아 지사와 채권 및 채무관계가 있는데(한국지사→일본 본사 : 40만 달러 채무, 한국지사→캄보디아 지사 : 50만 달러 채무, 30만 달러 채권, 일본 본사→캄보디아 지사 : 30만 달러 채무, 20만 달러 채권)
- ②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없이 (주)○○○가 상계센터에 60만달러를 지급하고, 상계센터가 일본 본사에 30만불을 지급하고 캄보디아 지사에 30만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 하였음

⇒ 거주자의 다자간 상계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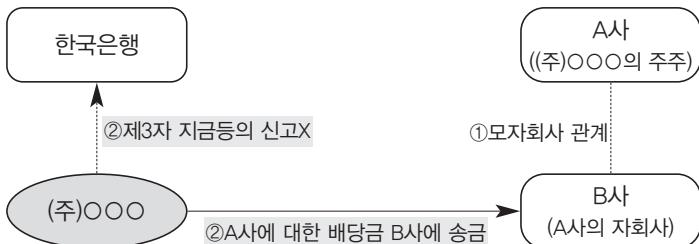
-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 당사자 간 상계를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사항이며
-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사항임

- 외국환은행은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함을 안내
- 고객으로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등 증빙서류 확인시 상계관련 결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

### 관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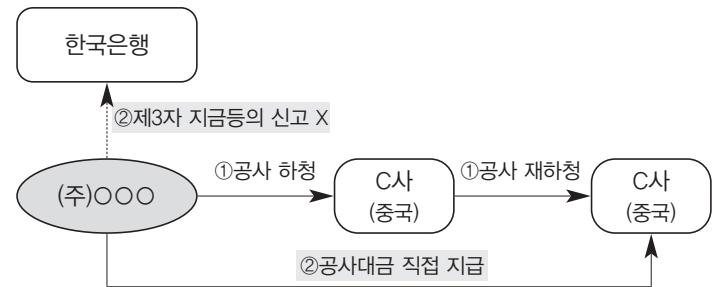
## ⑯ 자회사에 대한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OOO는  
 ①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주인 법인 A사가 법인 B사의 모회사  
 이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고 착오하여  
 ②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A사에 대한 배당금 3만불을  
 B사로 해외 송금하였음  
 ⇒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 누락

## ⑰ 하청업체에 대한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OOO는  
 ① 남아공 소재 A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국내의 B회사에게  
 하청을 주고 B회사는 이를 중국 소재 C회사에 재하청을 주었는데,  
 ② B사가 도산하자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C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  
 ⇒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 누락

거  
래  
당  
사  
자

- 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등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장(미화 5천불 초과 미화 1만불 이내) 또는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불 초과) 앞 신고사항

유  
의  
사  
항

은  
행

- 고객의 해외송금 신청시 제3자 지급여부를 확인
- 법인이 송금해야 할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계사 등에게 송금하는 경우 등 제3자 지급에 해당할 경우 송금액을 확인하여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임을 안내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거  
래  
당  
사  
자

- 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등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장(미화 5천불 초과 미화 1만불 이내) 또는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불 초과) 앞 신고사항

유  
의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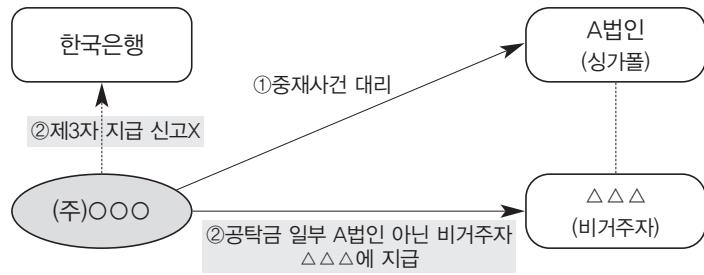
은  
행

- 고객의 해외송금 신청시 제3자 지급여부를 확인
- 회사의 도산등으로 다른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등의 금액을 확인하여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임을 안내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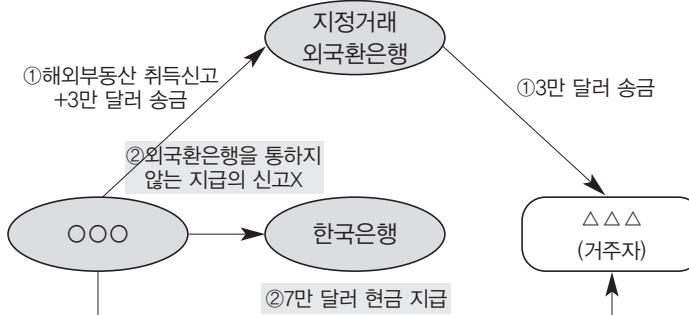
## ⑯ 공탁금 제3자 지급시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인 국내 법무법인 OOO는  
 ① 싱가폴 소재 법무법인 A를 대리하여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②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공탁금의 일부(11만7천달러)를 법무  
 법인 A가 아닌 다른 비거주자에게 송금하였음  
 ⇒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 누락

## 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국부동산 처분대금의 지급



위  
규  
내  
역

거주자 OOO는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거주자 △△△ 소유의 베트남 소재 토지를  
 10만달러에 매입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매입  
 자금의 일부인 3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  
 ②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에 잔금 7만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음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의 신고 누락

- 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거래당사자가 공탁금 등의 대리지급을 위하여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송금신청서상의 수취인과 증빙서류의 정당수취인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3자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고객의 해외송금 신청시 송금사유 및 제3자 지급여부를 확인
- 중재판정문 등 공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 내용을 면밀히 검토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함
-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취득신고수리를 받고 미화 1만불 초과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고객의 거래 등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보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및 해당 신고(보고)절차를 마친 것인지 확인
- 법령상 필요한 신고등의 절차가 누락된 경우 자진신고 절차 등 적법 절차를 안내할 필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 제2장 자본거래

##### I.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㉙ 거주자의 해외예금 거래시 신고누락

위규 내역	<p>① 해외예금계좌 개설 ② 10만달러 입금 ③ 공사대금 10만달러 지급</p> <p>거주자 (주)OOO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① 쿠웨이트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② 현지 건설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10만달러를 2차례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하였음 ⇒ 해외예금 신고 누락</p>
거래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려는 거주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li><li>다만, 거주자(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등 제외)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li></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거주자의 해외예금 계좌가 신고예외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li><li>신고된 예금계좌로부터 자금수령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li></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0-11조, 제7-4조, 제7-11조

## ② 해외입금보고서 미제출

위 규 내 역	<pre> graph LR     OOO((주)OOO) -- "①해외예금계좌 개설 ②1회 1만불 초과 입금" --&gt; DSB[독일 소재 은행]     DSB --&gt; ABank[A은행 (지정거래외국환은행)]     style OOO fill:#ccc,stroke:#000     style DSB fill:#fff,stroke:#000     style ABank fill:#fff,stroke:#000   </pre> <p>②해외입금보고서 제출 X</p>					
	<p>거주자 (주)OOO는</p> <p>① 독일 소재 은행에 해외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독일에서 12회에 걸쳐 EUR 1,374,008를 입금하여 예금거래를 하였는데,</p> <p>② 그 중 1회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EUR 644,563)하였는데도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인 A은행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p> <p>⇒ 해외입금보고서 제출의무 위반</p>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li> </ul>					
유의사항	<table border="1"> <tr> <td>은행</td><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해외예금 신고 접수시 해외입금보고서 및 잔액현황보고서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li> <li>해외입금보고가 있는 경우 30일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li> </ul> </td></tr> </table>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해외예금 신고 접수시 해외입금보고서 및 잔액현황보고서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li> <li>해외입금보고가 있는 경우 30일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해외예금 신고 접수시 해외입금보고서 및 잔액현황보고서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li> <li>해외입금보고가 있는 경우 30일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li> </ul>					
관련 법규	<p>「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p>					

## 3. 위반사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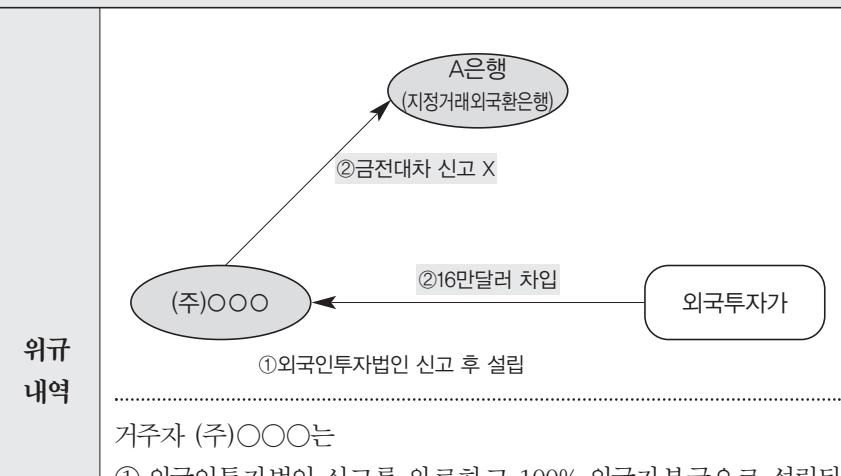
### 유형별 위반사례



### 제2장 자본거래

II.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㉒ 외국인투자법인의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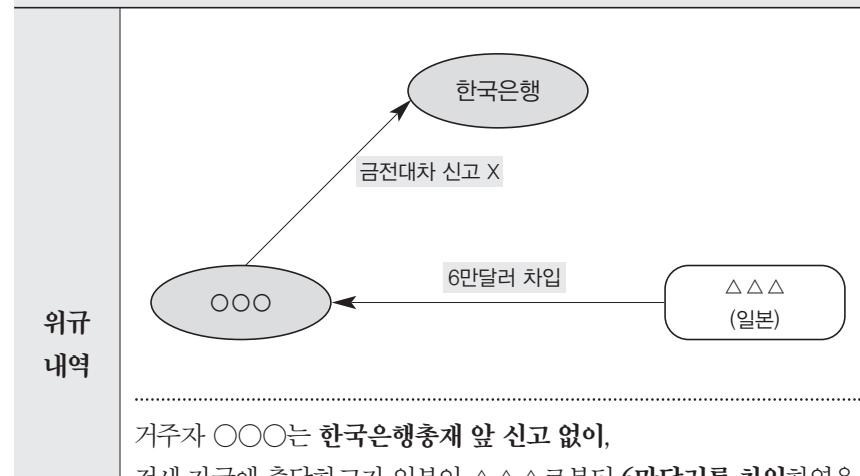


거주자 (주)OOO는  
 ① 외국인투자법인 신고를 완료하고 100% 외국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② 금전차입 형식으로 16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음

⇒ 외화차입 신고 누락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 규정」 제7-13조 제2호에 의해 신고의무 면제</li> <li>외국인투자법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더라도 차관계약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7-14조에 의해 신고 필요</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li> <li>「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신고를 안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7-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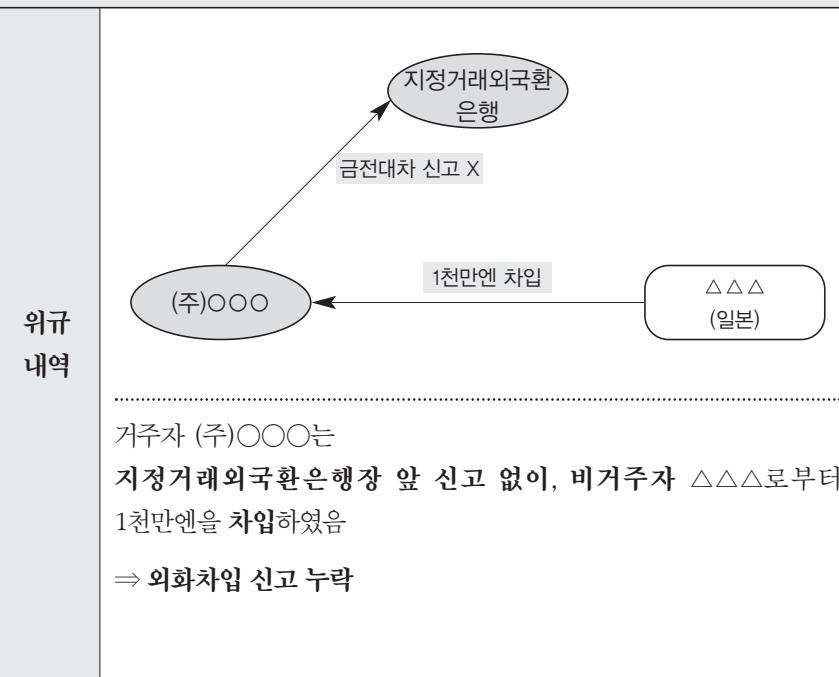
## ㉓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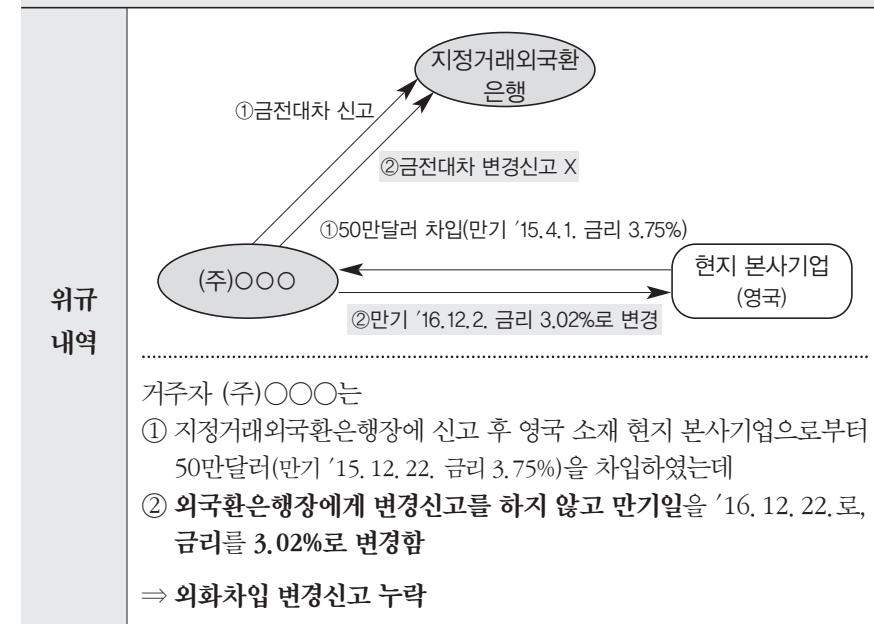
거주자 OOO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전세 자금에 충당하고자 일본인 △△△로부터 6만달러를 차입하였음  
 ⇒ 외화차입 신고 누락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li> <li>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외화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거주자 계정(외화통장)에 예치한 후 신고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은 해외로부터 송금시 반드시 수령 사유를 확인하고 사전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 제재기관장에게 위반사실을 보고</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㉔ 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누락



## ㉕ 영리법인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에 관한 변경신고 누락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사업자가 외화자금을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함</li> <li>금전대차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li> <li>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금전 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전에 신고기관에 금전대차계약 내용변경신고 필요</li> </ul>
은행	유의사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전대차계약 만기연장, 금리변경 등 신고내용의 변경은 사전신고 사항임을 충분히 안내</li> <li>외화자금 차입시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입금 상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li> <li>사전신고를 누락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li> </ul>
관련법규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제7-14조

## ㉖ 영리법인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에 관한 변경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p>① 금전대차 신고 ② 만기 '13.4.15로 연장 ③ 만기 '15.4.16로 재연장</p> <p>(주)OOO → 지정거래외국환 은행</p> <p>△△△ (인도네시아)</p> <p>① 195만달러 차입(만기 '12.4.15) ② 만기 '13.4.15로 연장 ③ 만기 '15.4.16로 재연장</p>
	<p>거주자 (주)OOO는</p> <p>① '10. 4. 16.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후 비거주자인 인도네시아 소재 △△△로부터 만기를 '12. 4. 15.로 하여 195만달러를 차입하였으나      ②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만기를 '13. 4. 15.로 연장하였으며,      ③ 그 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만기를 '15. 4. 16.로 재연장      ⇒ 외화차입 변경신고 누락(2건)</p>

## ㉗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시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p>금전대차 신고 X</p> <p>(주)OOO → 지정거래외국환 은행</p> <p>△△△ (일본)</p> <p>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 7억원 차입</p>
	<p>거주자 (주)OOO는</p> <p>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 소재 (주)△△△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 7억원을 차입      ⇒ 원화차입 신고 누락</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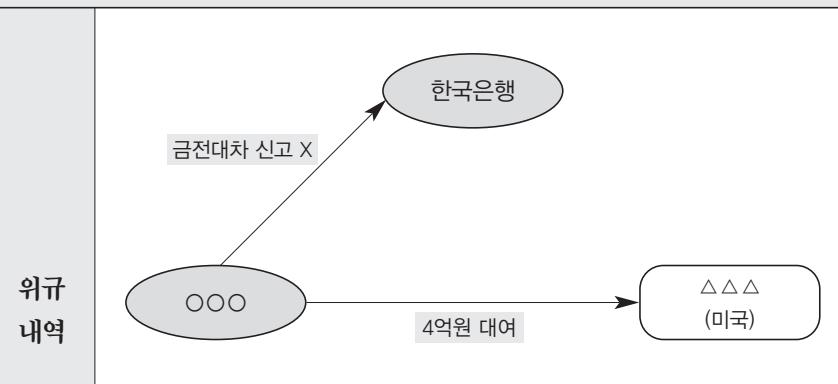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li> <li>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기관의 장에 사전에 변경신고 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입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기관에 내용변경 신고도록 안내</li> </ul>

관 련 법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당사자</li> <li>유의사항 은행</li> <li>관련 법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필요</li> <li>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li> <li>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인출 요청시 거주자와 금전대차거래를 위한 인출인 경우 거주자로 하여금 차입 금액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안내</li> <li>“비거주자자유원계정” 처분용도 중 인정된 거래항목을 숙지</li> <li>“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인출된 자금의 지급사유가 신고대상 거래인지 확인</li> </ul>

## ㉙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시 신고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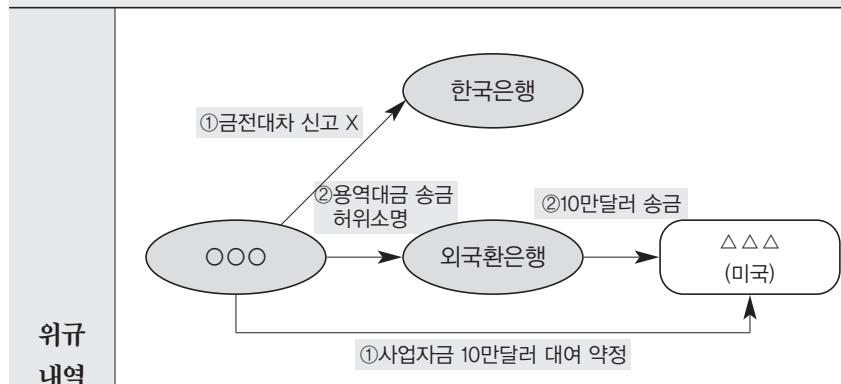


거주자 OOO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국 국적 비거주자인 아들 △△△에게 4억원을 대출(대여)하였음  
⇒ 금전대차 신고 누락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필요</li> <li>다른 거주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li> <li>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투자 대상인 외국법인에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토록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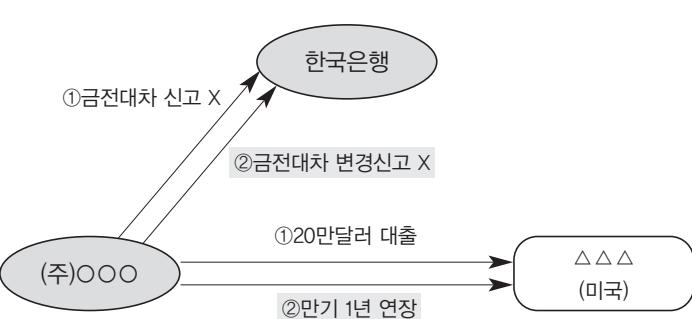
## ㉚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송금한도 내의 원화대출 신고 누락



거주자 OOO는  
 ①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미국 국적 비거주자인 동생 △△△에게 10만달러를 사업자금으로 대출(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② 은행의 송금 용도 확인 과정에서 송금 목적을 숨기고 용역대금이라고 허위소명하여 송금하였음  
 ⇒ 금전대차 신고 누락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송금의 실질이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은 해외 송금 처리시 송금사유,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향후 상환여부 등 확인 필요</li> <li>송금사유 확인결과 신고절차가 필요한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적법 절차 안내</li> <li>금전대차거래를 증빙없이 송금하는 경우 향후 원리금이 국내로 송금되었을 때 감독기관의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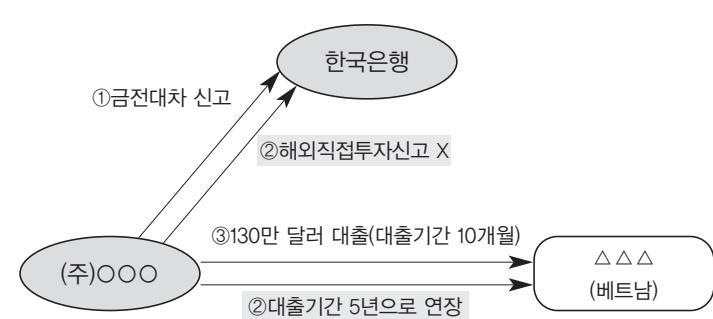
### ⑩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계약의 만기연장 신고누락



거주자 (주)OOO는

- ① 한국은행총재에게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 신고 후 미국 법인 △△△에게 20만달러를 대출하였으나,
- ②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였음  
⇒ 금전대차계약 변경신고 누락

### ⑪ 금전대차 만기가 1년미만에서 1년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신고누락



거주자 (주)OOO는

-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앞 금전대차 신고 후 해외직접투자한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 △△△에 대출(대여)기간을 10개월로 하여 130만 달러를 대출(대여)하였는데,
- ② 대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는데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와 대출계약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b>변경사항 및 변경사유</b>를 첨부하여 <b>한국은행총재에게 변경신고</b> 필요</li> </ul>
-------	---

유의사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신고시 금전대차계약 만기연장, 금리변경 등 내용변경은 신고 사항임을 충분히 안내하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입금 상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li> <li>• 금전대차계약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감독기관에 자진신고 절차 등 적법절차를 안내</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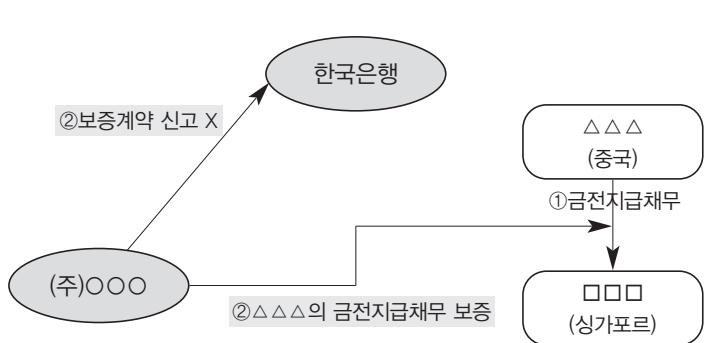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7-16조
-------	-------------------------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과 체결한 <b>금전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b>, 금전대차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b>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신고하여야 함</b></li> </ul>
-------	--

유의사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전대차계약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b></li> </ul>
------------	--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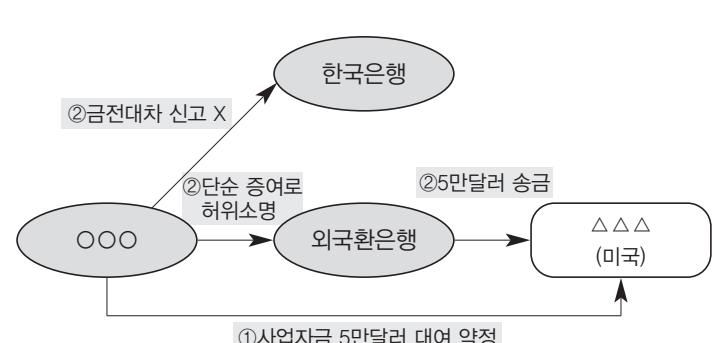
### ③② 거주자의 채무보증계약 체결시 한국은행총재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는
- ①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Co.Ltd가 싱가포르 소재 법인 □□□에 부담하는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 ②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Co.Ltd의 채무에 관하여 법인 □□□에 보증하였음
- ⇒ 보증계약 신고 누락

### ③③ 거주자의 채무보증계약 만기연장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 거주자 ○○○는
- ① 영국 소재 법인 △△△와 영국 소재 □□□Bank가 체결한 금전 대차계약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고 △△△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는데,
  - ② 그 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 ⇒ 보증계약 변경신고 누락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신고 면제사유 및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함</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의 자본거래에 관한 채무보증계약시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임을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신고 면제사유 및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함</li> <li>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보증계약 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전에 신고기관에 보증계약 변경신고 필요</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신고시 보증계약 만기연장 등 내용의 변경은 사전신고사항 임을 충분히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제7-4조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 제2장 자본거래

III.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④ 해외 콘도 회원권 취득거래 신고누락

위규 내역	
	<p>거주자 OOO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없이 미국 거주 비거주자로부터 하와이 소재 콘도 회원권을 8만달러에 취득</p> <p>⇒ 외국의 시설물 회원권 매입거래 신고 누락</p>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이용· 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li></ul>
유의사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국환은행은 해외 송금 처리시 송금사유,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향후 상환여부 등을 확인</li><li>외국의 부동산·시설물 이용에 관한 회원권 매입 의도가 확인되면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 대상임을 안내</li></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 ③ 해외 골프장 회원권 취득거래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pre> graph LR     A([OOO]) -- "6백만엔 지급" --&gt; B([비거주자 (일본)])     B -- "동경 소재 골프장 회원권 이전" --&gt; C([외국환은행])     C -- "시설물 회원권 매입거래 신고 X" --&gt; D([시설물 회원권 매입거래 신고 누락])   </pre> <p>거주자 OOO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없이 일본 거주 비거주자로부터 동경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6백만엔에 취득 ⇒ 외국의 시설물 회원권 매입거래 신고 누락</p>
거래 당 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li> </ul>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은 해외 송금 처리시 송금사유,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향후 상환여부 등을 확인</li> <li>외국의 부동산·시설물 이용에 관한 회원권 매입 의도가 확인되면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 대상임을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 제2장 자본거래

#### IV. 증권의 발행 및 증권의 취득

⑥ 2인 이상 공동 해외직접투자시 투자비율 합계 10% 미만(개별신고)

<p>위 규 내 역</p> <p>거주자 OOO, △△△ 2인은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① A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연명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뒤      ② A은행을 통해 30만달러를 송금하여 중국 소재 □□□유한공사의 지분을 각각 4%씩 취득      ⇒ 외화증권 취득신고 누락</p>
---

<p>거래당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투자지분의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여 각자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li> <li>전체 투자비율의 합계가 10% 이상인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거래당사자들이 연명하여 최대 출자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li> </ul>

<p>유의사항 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직접투자 연명 신고수리 심사과정에서 당해 건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전체 투자지분 합계 10%이상)되는지 여부를 확인</li> <li>합산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외화증권취득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임을 안내</li> <li>2인 이상의 공동 투자로써 총 투자비율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거주자가 연명으로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li> <li>해외직접투자 요건(투자비율 10%이상 등) 숙지</li> </ul>

<p>관련 법규</p> <p>「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p>
--

⑦ 용역의 대가를 주식으로 수령하면서 증권 취득신고 누락

<p>위 규 내 역</p> <p>거주자 (주)OOO는      ① 캄보디아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지 법인 △△△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여,      ② 한국은행총재앞 신고 없이 공사대금의 일부 대신 현지 법인 △△△의 주식 8%를 이전받아 취득하였음      ⇒ 외화증권 취득신고 누락</p>
--

<p>거래당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대상이거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행총재에 사전신고 하여야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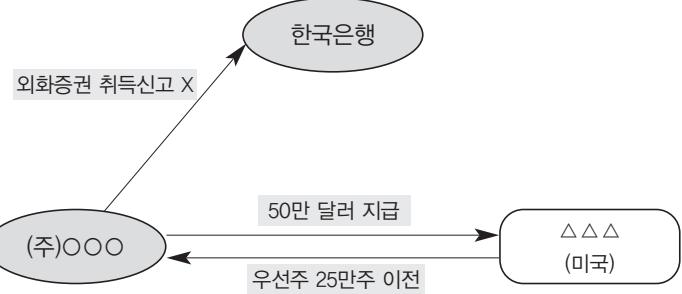
  

<p>유의사항 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행총재 앞 사전신고 없이 용역 대가의 일부를 외화증권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 및 증권 취득신고 절차 진행 등 적법절차를 안내</li> <li>해외 용역대가 수령에 따른 증권취득 금액이 계약서에 약정된 금액 인지 확인</li> </ul>

<p>관련 법규</p> <p>「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p>
--

### ③8 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OOO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미국 소재 법인 △△△ 빌행 우선주 25만주를 50만달러에 취득하였음  
⇒ 외화증권 취득신고 누락

- 거래당사자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대상이거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행총재에 사전신고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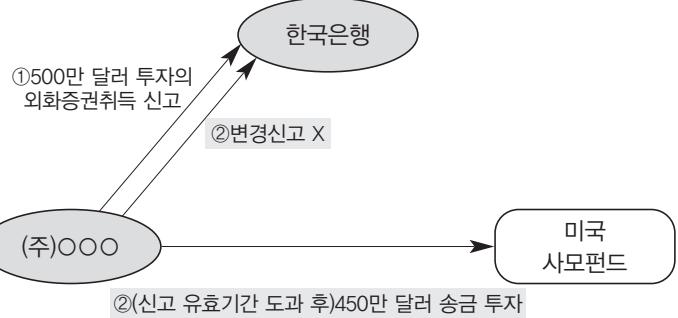
유  
의  
사  
항

- 은행
- 해외송금 처리과정에서 송금 사유 및 목적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보고)가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및 해당 신고 절차를 안내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 ③9 사전신고서 유효기간 경과 후의 증권취득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OOO는  
① 한국은행총재에 미국 사모펀드에 대해 5백만달러를 투자하는 증권취득 신고를 마쳤으나,  
② 신고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변경신고하지 않고 10회 이상에 걸쳐 총 450만 달러를 송금하여 투자  
⇒ 증권 취득 변경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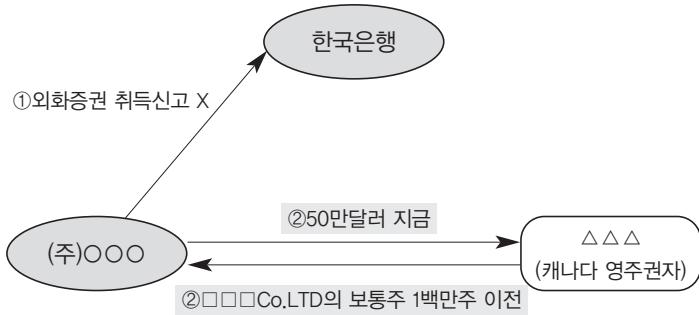
- 거래당사자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예외 거래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
  - 외화증권 취득을 신고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 제출 하여야 함

- 은행
- 해외송금 과정에서 송금 사유 및 목적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외국환 거래법령상 신고(보고)가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 거주자의 외화증권취득 신고에 의거한 해외송금인 경우 유효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할 필요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7-4조

#### ④⓪ 거주자가 한국국적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시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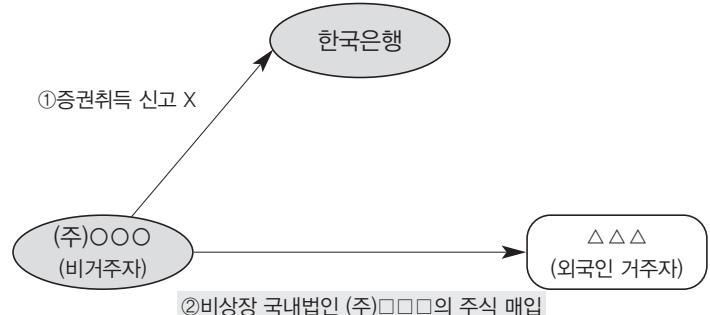
거주자 (주)OOO는

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② 캐나다 영주권자로 국민인 비거주자 △△△로부터 캐나다소재 □□□Co.LTD의 보통주 1백만주(지분율 1.6%)를 50만달러에 매입 하였음

⇒ 외화증권취득 신고 누락

#### ④⓪ 비거주자의 원화 증권취득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비거주자 (주)OOO는

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② 외국인 거주자 △△△으로부터 비상장 국내법인 (주)□□□의 주식 22,798주를 5천만원에 매입함

⇒ 증권취득 신고 누락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대상 이거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행총재에 사전신고 하여야 함</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송금과정에서 송금 사유 및 목적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외국환 거래법령상 신고(보고)가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li> <li>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및 해당 신고 절차를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 앞 사전신고</li> <li>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 사전신고</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송금 과정에서 송금 사유 및 목적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외국환 거래법령상 신고(보고)가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li> <li>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및 해당 신고 절차를 안내</li> <li>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진신고절차 및 증권취득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 ④② 비거주자가 원화주식 1주 취득시 신고누락

위규 내역	<p>①증권취득 신고 X ②10만원 지급 ③비상장 국내법인 (주)□□□의 주식 1주 이전 비거주자 OOO는 ①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 취득신고 없이, ② 비상장 국내법인 (주)□□□의 원화 표시 주식 1주(지분율 0.01%) 를 거주자 △△△으로부터 10만원에 매입함 ⇒ 증권 취득신고 누락</p>
거래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 사전신고 해야 함</li> <li>취득규모나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단 1주라도 취득하게 되면 사전신고해야 함에 유의</li> </ul>
유의사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송금 처리과정에서 송금 사유 및 목적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보고)가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li> <li>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및 해당 신고 절차를 안내</li> <li>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진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증권취득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제7-32조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 제2장 자본거래

#### V. 파생상품거래

### ④③ 파생상품거래 신고누락

<p><b>위규 내역</b></p> <p>①파생상품거래 신고 X</p> <p>②Call Option 계약 체결 (싱가포르 현지법인)</p> <p>거주자 OOO는</p> <p>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② 싱가포르 현지법인 △△△과 국내회사 (주)□□□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all Option 계약을 체결함 ⇒ 파생상품거래 신고 누락</p>	
<p><b>거래 당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신고의 예외대상이 아닌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li> </ul>	<p><b>유의사항 은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의 파생상품 거래가 신고의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절차 등 적법절차 안내</li> </ul>
<p><b>관련 법규</b></p> <p>「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p>	

## 3. 위반사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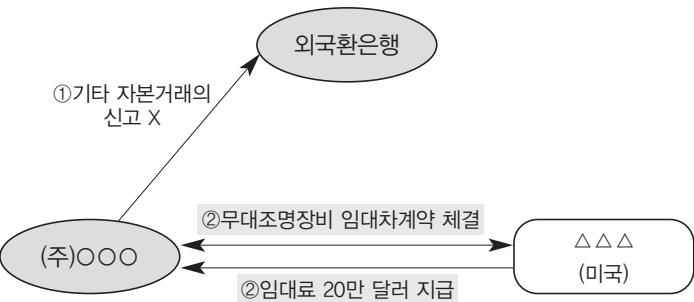
### 유형별 위반사례



### 제2장 자본거래

#### VI. 기타의 자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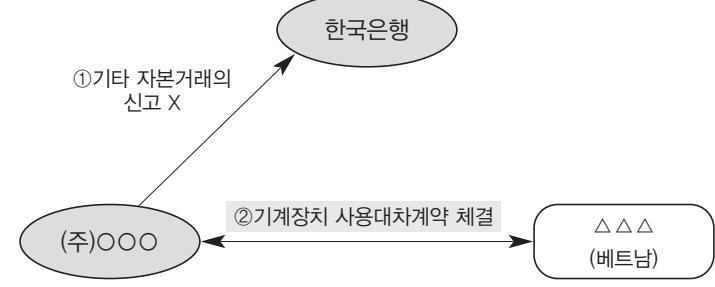
#### ④④ 비거주자와의 3천만달러 이하 물품 임대차계약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는
- ①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 ② 미국의 △△△와 무대조명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20만달러를 수령
- ⇒ 기타 자본거래 신고 누락

#### ④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사용대차계약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는
- 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 ② 베트남 현지법인 △△△와 주파수측정기, 연미가 등 기계장치에 관한 5년 기간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
- ⇒ 기타 자본거래 신고 누락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계약 전당 3천만달러 이하인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li> <li>•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계약 전당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li> </ul>

유 의 사 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수익금 등을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 또는 신고여부 확인 필요</li> <li>• 해외로부터 주기적인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사유 재차 확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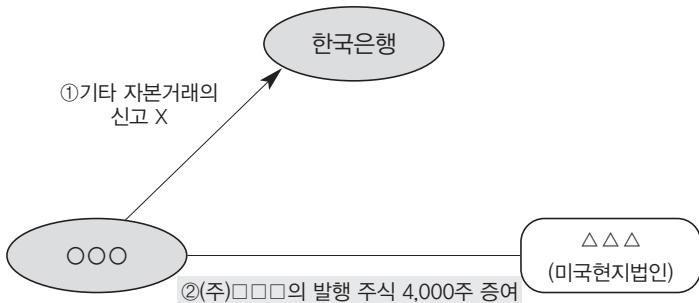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	--------------------------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하여야 함</li> </ul>

유 의 사 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의 거래 등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보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및 해당 신고(보고)절차를 마친 것인지 확인</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	--------------------------

#### ④⁶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 증여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 거주자 OOO는
- 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 ② 비거주자인 △△△에게 국내 비상장 법인 (주)□□□의 발행 주식 4,000주(5억원 상당)를 증여
- ⇒ 거주자의 기타 자본거래 신고 및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 누락

거  
래  
당  
사  
자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상속, 유증은 제외)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비등록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 그 외의 경우(거주자가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여야 함
- 세법상 증여신고와는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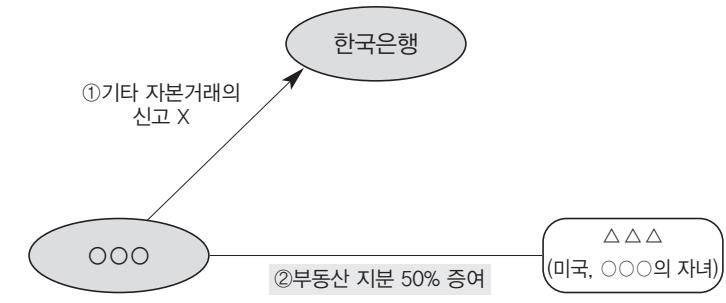
유  
의  
사  
항

-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등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보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및 해당 신고(보고)절차를 마친 것인지 확인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제7-32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 ④⁷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 거주자 OOO는
- 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 ② 비거주자인 미국인 자녀△△△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 지분 50%(12억상당)를 증여하였음
- ⇒ 기타 자본거래 신고 누락

거  
래  
당  
사  
자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상속, 유증은 제외)는 혈연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함
- 세법상 증여신고와는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등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보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및 해당 신고(보고)절차를 마친 것인지 확인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 ④⑧ 거주자 비거주자간 영화투자계약 신고누락

<p><b>위규 내역</b></p> <pre> graph LR     A((주)OOO) -- ① 기타 자본거래의 신고 X --&gt; B([한국은행])     A -- ② 영화 투자계약 체결 --&gt; C((미국현지법인))     C -- ③ 투자금 30만 달러 수령 --&gt; B   </pre> <p>거주자 (주)OOO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국 소재 현지법인 △△△과 영화 투자계약(조합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투자금 30만달러를 수령 ⇒ 기타 자본거래 신고 누락</p>
<p><b>유의사항</b></p> <p><b>거래당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조합과 유사한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채권 발생 등에 관한 거래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li> </ul>
<p><b>은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등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보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및 해당 신고(보고)절차를 마친 것인지 확인</li> </ul>
<p><b>관련 법규</b></p> <p>「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p>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 제3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 I. 해외직접투자

#### ④⁹ 휴대반출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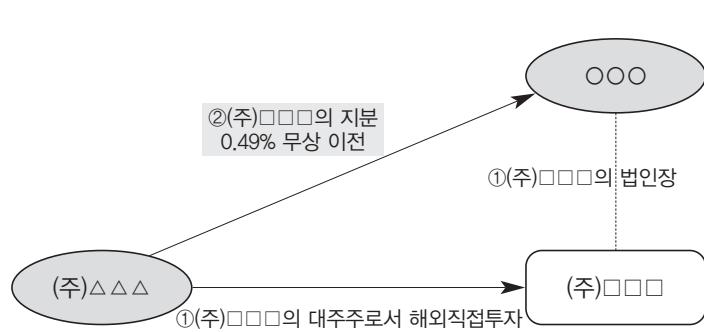
<p><b>위규 내역</b></p> <pre> graph TD     A((주)OOOOOO) -- "① 현지법인 △△△ 설립" --&gt; B((△△△ 싱가포르))     B -- "② 휴대반출한 10만 SGD로 지분투자" --&gt; C((△△△))     C --&gt; D((외국환은행))     </pre> <p>거주자 (주)OOOOOO는 외국환은행장앞 해외직접투자신고 없이      ① 싱가포르에 현지법인 △△△를 설립하였으며      ② 10만 SGD를 휴대반출하여 △△△에 투자하여 해당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p>
--

#### ⑤⁰ 거주자간 지분양수도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p><b>위규 내역</b></p> <pre> graph TD     A((주)OOOOO) -- "② 태국 현지법인 △△△의 지분 78.6% 이전" --&gt; B((주)OOOO)     B -- "① 해외직접투자신고 X" --&gt; C((외국환은행))     </pre> <p>거주자 (주)OOOOO는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② 태국 현지법인 △△△Co.,LTD에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      (주)OOOOO로부터 해당 현지법인의 지분 78.6%를 양수      ⇒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및 해외직접투자신고 누락</p>
---

<p><b>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장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함</li> <li>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휴대반출, 무상 취득 등)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함에 유의</li> </ul>	<p><b>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직접투자 후 거주자간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도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변경보고를,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를 하여야 함</li> </ul>
<p><b>은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모든 신고절차는 사전신고가 원칙</li> </ul>	<p><b>은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직접투자신고시 거주자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는 해외직접투자의 변경보고를, 양수인에게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li> </ul>
<p><b>관련 법규</b></p> <p>「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9조</p>	<p><b>관련 법규</b></p> <p>「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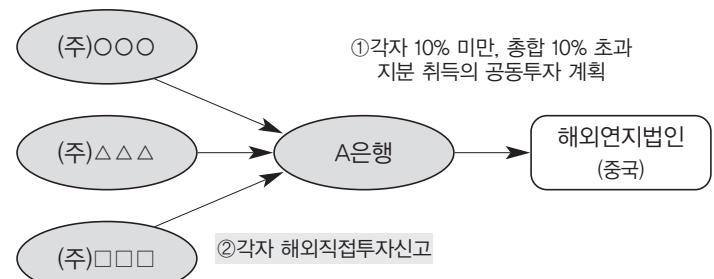
## ⑤① 10% 미만 지분 무상 취득시 해외직접투자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 ○○○는  
 ① 거주자 (주)△△△가 대주주로 있는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  
 (주)□□□의 법인장으로 파견되면서,  
 ②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없이 (주)□□□와 (주)△△△에 공동투자할  
 의사로 (주)□□□가 보유한 (주)△△△의 지분 중 0.49%를 증여  
 받았음  
 ⇒ 해외직접투자신고 누락

## ⑤② 2인 이상 공동으로 투자지분 합계 10% 이상인데 각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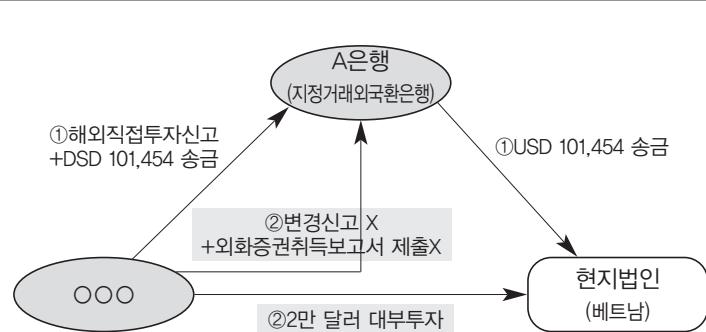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 (주)△△△, (주)□□□ 3개사는,  
 ① 중국소재 현지법인에 각각 200만~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동  
 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② 투자지분의 합계가 10%를 초과하나 각자 취득하는 투자지분은  
 10%미만인데도 A은행에 각자 해외직접투자신고  
 ⇒ 해외직접투자(연명신고) 신고누락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의 개별 투자지분이 10%미만이더라도 공동투자한 투자 지분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최다출자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연명 하여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하여야 함  •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휴대반출, 무상 취득 등)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함에 유의
	• 해외직접투자 요건(투자비율 10%이상 등)을 숙지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9조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당사자의 개별 투자지분이 10%미만이더라도 공동투자한 투자 지분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최다출자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연명 하여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하여야 함</li> <li>현지법인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취득하면서 연명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 외화증권취득 신고 필요</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직접투자 요건(투자비율 10%이상 등)을 숙지</li> <li>수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지분의 합계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명신고대상임을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9조

⑤ 신고 후 일부 대부투자로의 변경 및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미제출



위  
규  
내  
역

거주자 OOO은

- 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지분율 100%) 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2차례에 걸쳐 101,454달러를 송금하였는데,
- ② 송금대금 중 일부(2만 달리)를 대부투자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지분에 대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해외투자신고 변경보고 누락 및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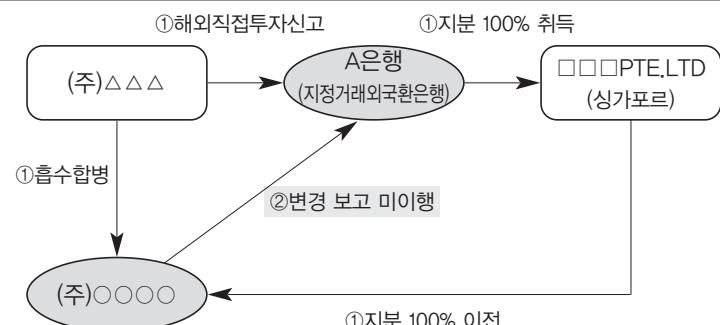
- |                  |  |
|------------------|--|
| 유<br>의<br>사<br>항 | •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
|                  | •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증권취득사실을 보고해야 함                        |

- |        |  |
|--------|--|
| 은<br>행 |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최초 신고한 내용대로 지분취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 외화증권취득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자에 이행을 독촉 |
|        | • 최초 해외직접투자자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⑥ 회사 합병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 지분 인수 관련 변경보고 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은

- ① (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주)△△△가 100% 소유하고 있던 싱가포르 소재 현지법인 □□□PTE, LTD의 지분을 이전받았음에도,
- ② 흡수합병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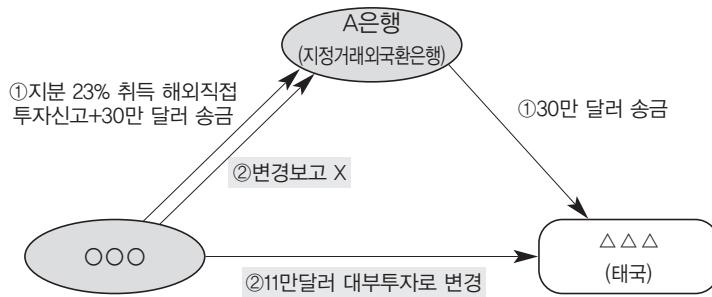
- |                  |  |
|------------------|--|
| 유<br>의<br>사<br>항 | •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
|                  | •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자가 법인일 때 신고 후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 혹은 신설 법인이 변경보고를 해야 함에 유의       |

- |        |  |
|--------|--|
| 은<br>행 | • 최초 해외직접투자자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
|--------|--|

관  
련  
법  
규

「행정절차법」 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 9-5조

## ⑤ 지분투자를 대부투자로 변경하였으나 변경 보고 누락



위 규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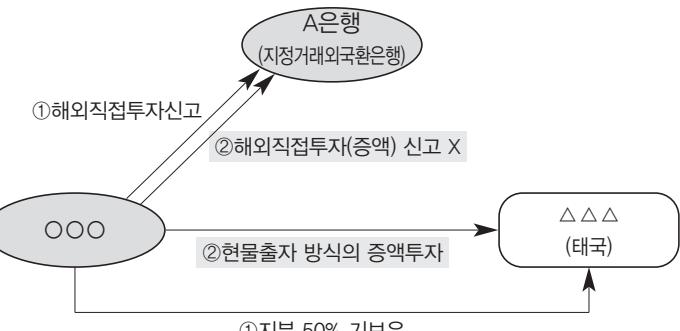
- 거주자 OOO은
- ① A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태국의 △△△.Co.,LTD의 지분 23%를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같은 날 30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 ② 이 중 11만달러를 대부투자로 변경하고도 3개월 이내에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누락

- 거래당사자
-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 유의사항 은행
-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 사후관리 과정에서 최초 신고 내용대로 지분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하고 송금금액과 지분취득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

-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⑥ 현물출자 방식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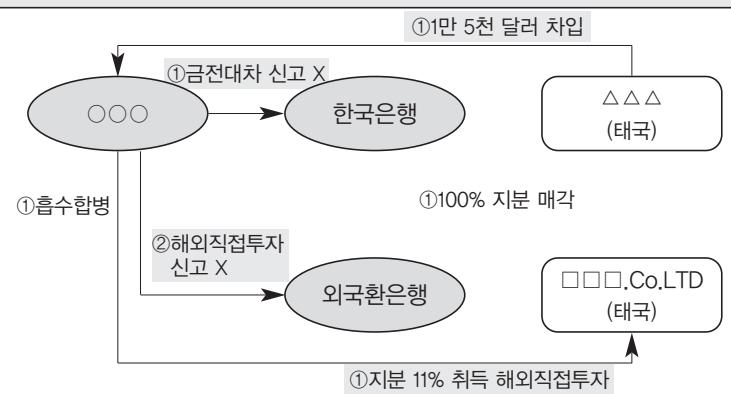
- 거주자 OOO은
- ① A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뒤 태국 소재 △△△.LTD의 지분 50%를 취득하였는데,
  - ② A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4만 달러 상당의 기계를 현물출자하여 증액투자하였음
- ⇒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 거래당사자
-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휴대반출, 무상 취득 등)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은행
-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증액투자 시 사전신고가 필요함을 안내
  - 사후관리 과정에서 최초 신고 내용대로 지분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하고 송금금액과 지분취득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

-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⑤7 현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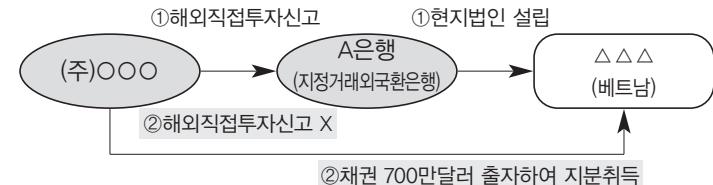
- 유의사항
- 거래당사자
-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휴대반출, 무상취득 등)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

- 은행
- 외국환거래법령상 필요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후 관련 자금을 국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송금 과정에서 송금 사유와 목적을 확인할 필요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⑤8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는 방식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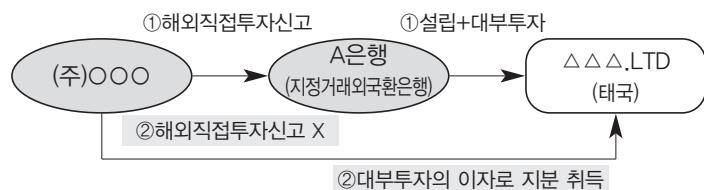
- 유의사항
- 거래당사자
-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휴대반출, 무상취득, 현지자금조달 등)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함에 유의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증액신고를 하여야 함

- 은행
- 사후관리과정에서 송금액과 지분취득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취득경위를 확인할 필요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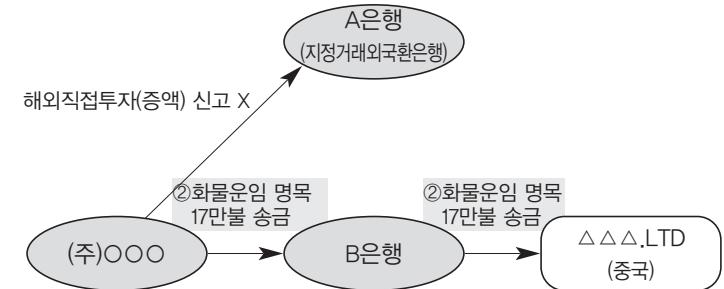
## ⑤ 대주주의 이자 출자 방식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태국에 현지법인 △△△.LTD를 설립한 뒤 25차례에 걸쳐 THB 56,850,000의 대부주자를 하였는데,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없이 대부주자에서 발생한 이자 THB 3,150,000를 출자하여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
- ⇒ 해외직접투자 (증액) 신고 누락

## ⑥ 우회·편법적 송금을 통한 자본금 납입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해외직접투자한 중국 현지법인 △△△.LTD의 증자에 참여하려는 의도임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 A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 A은행이 아닌 B은행을 통해 화물운임의 명목으로 17만 달러를 송금
- ⇒ 해외직접투자 (증액) 신고 누락 및 지급절차 위반

- 거래 당사자**
-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휴대반출, 무상 취득, 현지자금조달 등)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함에 유의
  - 대부주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증액신고 필요

- 거래 당사자**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투자금액 송금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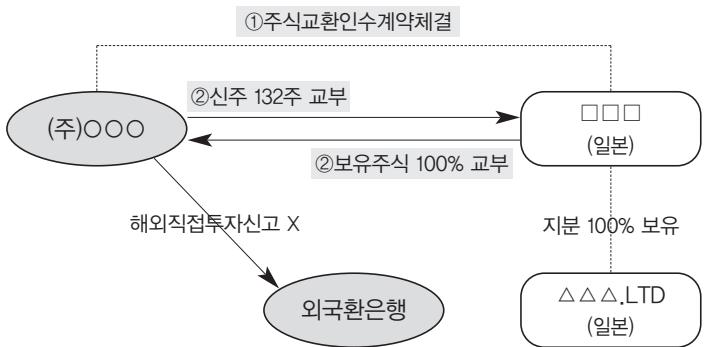
- 은행**
- 사후관리과정에서 송금액과 지분취득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취득 경위를 확인할 필요

- 은행**
- 송금신청서상의 수취인이 해외현지법인인 경우 해외직접투자목적의 송금인지 여부를 확인(외국환거래법상 다른 신고절차 회피수단으로 편법 송금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
  - 지분취득이 확인된 경우 송금금액과 지분취득금액이 불일치시 사유를 확인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신고 없이 증액투자된 경우 관련 법규 위반임을 안내

-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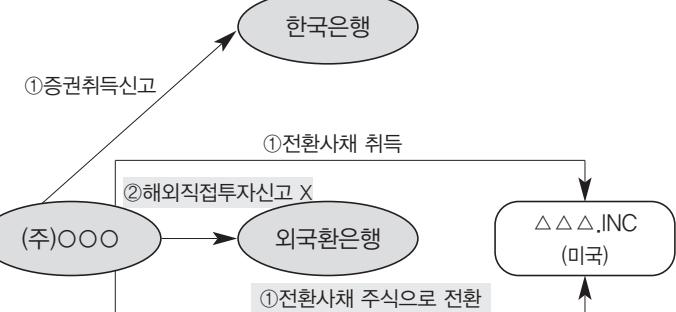
## ⑥① 주식 교환 방식의 해외직접투자



거주자 (주)OOO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 ① 일본 △△△.IN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적 비거주자 □□□와 주식교환인수계약을 체결하여
- ② (주)OOO의 신주 132주와 △△△.INC의 주식 100%를 교환  
⇒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 ⑥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거주자 (주)OOO은

- ①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고 미국 현지법인 △△△.INC가 발행한 전환사채(약 17만4천달러)를 취득하였으나,
- ②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위 전환사채를 주식 197,103주(총 지분비율 10% 초과)로 전환  
⇒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거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사전에 신고해야 함
-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휴대반출, 무상취득 등)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에 유의

위 규  
내 역

-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거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사전에 신고해야 함
-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송금을 통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휴대반출, 무상취득 등) 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함에 유의

유  
의  
사  
항

- 해외직접투자 요건(투자비율 10%이상 등)을 숙지
- 사전신고를 누락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거래  
당  
사  
자  
유  
의  
사  
항

- 해외직접투자 요건(투자비율 10%이상 등)을 숙지
- 사전신고를 누락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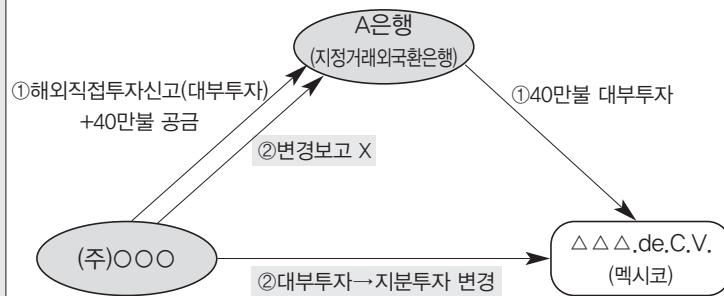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⑥③ 지분율 100%의 현지법인에 대부투자로 신고 후 지분투자



위 규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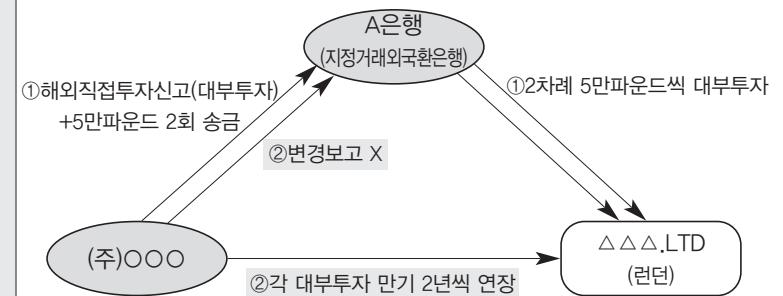
거주자 (주)○○○은

- ① 외국환은행장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소재 현지법인 △△△,de,C.V.에 대부투자를 하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40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 ② 송금한지 3년 만에 지분투자로 변경하였음에도 3개월 이내에 변경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누락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보고하여야 함</li> <li>• 해외현지법인의 대부투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당초 신고내용의 변경이므로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할 필요</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신고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안내</li> <li>• 송금금액과 지분취득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신고 없이 증액투자된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임을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⑥④ 대부투자의 만기 연장의 변경보고 누락



위 규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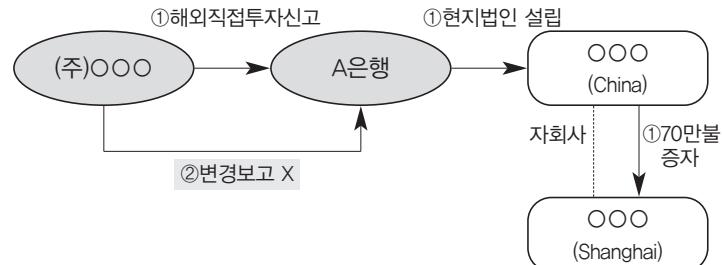
거주자 (주)○○○은

- ① 외국환은행장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소재 현지법인 △△△.LTD에 2차례 5만 파운드씩 각 2년의 대부투자를 하였으나,
- ② 모두 만기를 2년씩 연장하였음에도 만기 연장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누락

유 의 사 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보고하여야 함</li> <li>•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당초 신고 내용의 변경이므로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할 필요</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신고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⑥⑤ 현지법인의 현지투자에 대해 변경보고 누락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은
-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 중국에 지분 100%의 현지법인 OOO(China),co.LTD를 설립하였는데,
  - OOO(China),co.LTD 가 동 현지법인의 자회사인 OOO(Shanghai),co.LTD에 70만불을 증자하였음에도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누락

거  
래  
당  
사  
자

-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보고하여야 함
-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은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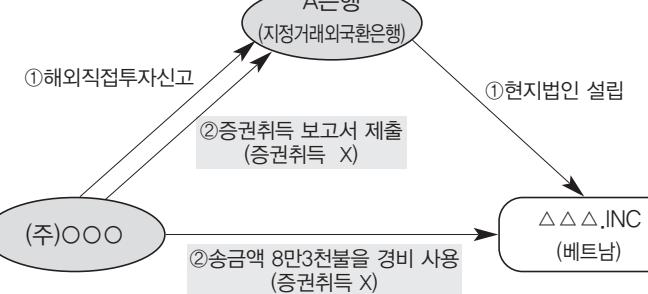
유  
의  
사  
항

- 은  
행
- 최초 신고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안내
  - 최초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은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필요사항임을 안내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⑥⑥ 외화증권취득 보고서 허위 제출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은
- A은행에 베트남에 지분 100%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현지법인 △△△.INC을 설립하였는데,
  - 설립 전 3차례에 걸쳐 8만3천 달리를 송금한 부분에 대해 외화증권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증권취득 없이 설립 경비 등으로 사용

⇒ 해외직접투자 증권취득 허위보고

거  
래  
당  
사  
자

-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
- 해외직접투자자가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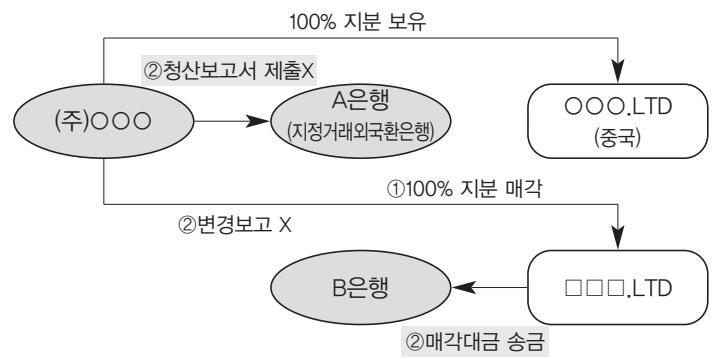
유  
의  
사  
항

- 은  
행
- 최초 신고시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거짓으로 보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⑥⑦ 청산보고서 미제출 및 지급절차 위반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A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 △△△.LTD의 지분 100%를 비거주자 □□□.LTD에 7만6천 달러에 매각한 금액을 B은행을 통해 수령하였고
  - ② A은행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 해외직접투자 청산보고서 미제출 및 지급절차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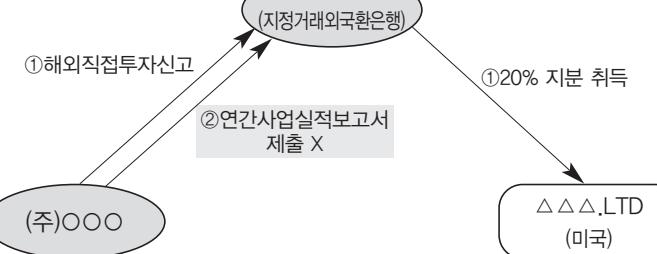
- 거래당사자
-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청산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한 경우 분배잔여재산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여야 함

- 유의사항 은행
- 최초 신고시 청산의 경우 청산보고서 제출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분배잔여재산 회수의무를 안내
  -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자금임이 확인된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 4-2조, 제9-6조

## ⑥⑧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위반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A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미국 소재 현지법인 △△△.INC 의 지분 20%를 취득하였는데,
  - ②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 해외직접투자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위반

- 거래당사자
- 해외직접투자를 한 투자자는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연간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은행
- 최초 신고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
  -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투자자에 연락하여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 안내 및 독촉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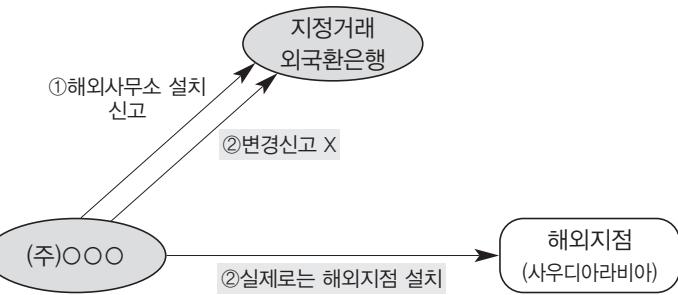
#### 제3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 II . 해외(국내)지사

##### ⑥⑨ 해외사무소 설치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p>①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 X (주)OOO → ① 해외사무소 설치 ② 운영경비 송금 → 해외사무소 (베트남)</p> <p>거주자 (주)OOO은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없이 베트남 소재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② 해외사무소 운영경비로 총 6회에 걸쳐 8만달러를 송금하였음 ⇒ 해외사무소 설치신고 누락</p>
거 래 당 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해외사무소나 해외지점을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에 신고 하여야 함</li></ul>
유 의 사 항 으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송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후 송금절차를 진행</li><li>수취인명과 송금인명이 유사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혹은 해외지사 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소 자체 설치비, 운영비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지사 설치신고 안내</li><li>특히 해외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자금수입원이 국내 본사 송금에 의존 하므로 동일 수취인에 대한 주기적인 송금에는 주의할 필요</li><li>해외지사 설치 초기 자금을 직원을 통해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전액이 해외체제기간 및 지역 등에 비해 과다할 경우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li></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 ⑦① 해외사무소 설치신고 후 실제로는 해외지점 설치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 하였으나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인 해외지점을 설치하였음
- ⇒ 해외지사 설치 변경신고 누락

- 거래당사자
- 해외지사설치 신고시 해외사무소와 해외지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
  -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것이나, 해외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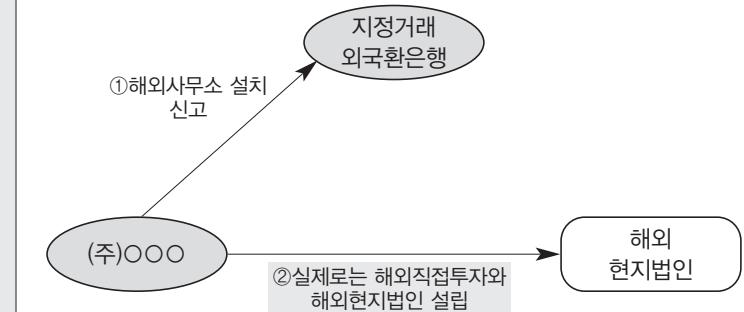
유  
의  
사  
항

- 은행
- 거래당사자가 해외지사 설치 사전신고를 할 때 해외지점·해외사무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 해외사무소는 현지 업무연락,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만을 담당하고 자체적인 수입원이 없는 바, 국내본사에서 해외사무소로 당발 송금 사유를 명확히 확인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 ⑦② 해외사무소 설치신고 후 해외직접투자의 현지법인 설립



위 규  
내 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하고 설립비용을 송금하였으나,
  - ② 실제로는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거래당사자  
유의사항

- 해외진출시 해외지사 설치와 해외직접투자 목적의 현지법인 설립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전신고 필요
- 해외지사의 설치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외지사 설치 신고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며,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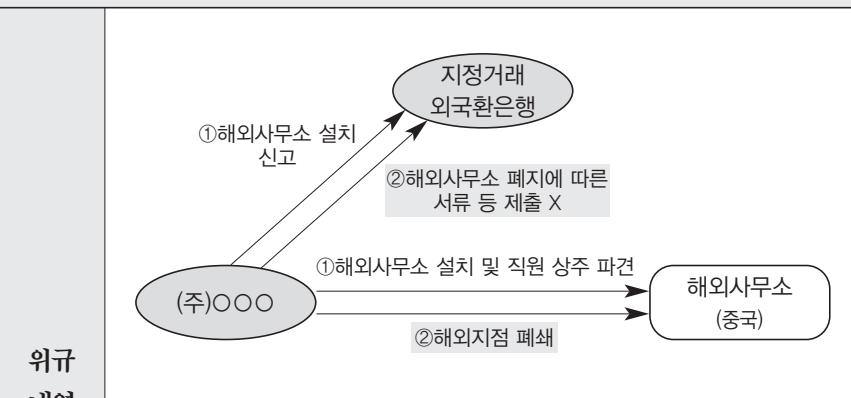
은행

- 기업이 해외지사와 해외법인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신고 처리시 해외법인과 해외지사의 차이를 충분히 안내
- 해외지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 ⑦ 해외지사의 폐쇄에 따른 서류 등 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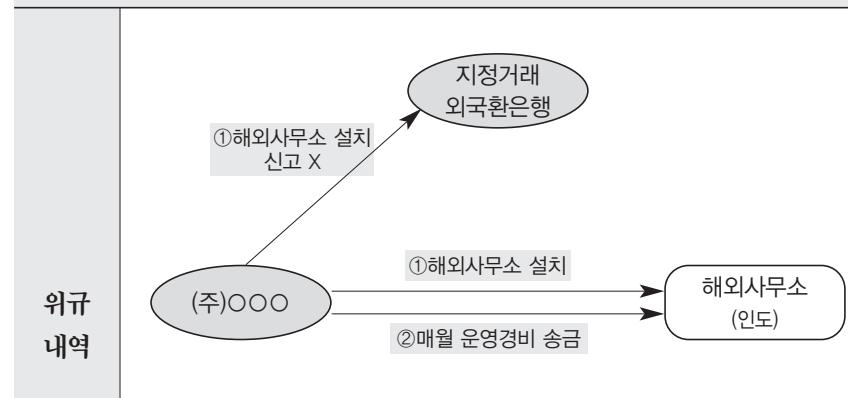
위규  
내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중국 소재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 직원을 상주 파견하였다가
  - ②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하였음에도 해외사무소 폐쇄에 따른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 해외지사 폐쇄시 서류미제출

- 거래당사자
- 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지사로부터의 거액의 타발송금은 해당 해외지사의 청산 대금일 수 있으므로 사유를 명확히 파악</li> <li>• 해외지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24조

## ⑧ 해외사무소 운영경비 편법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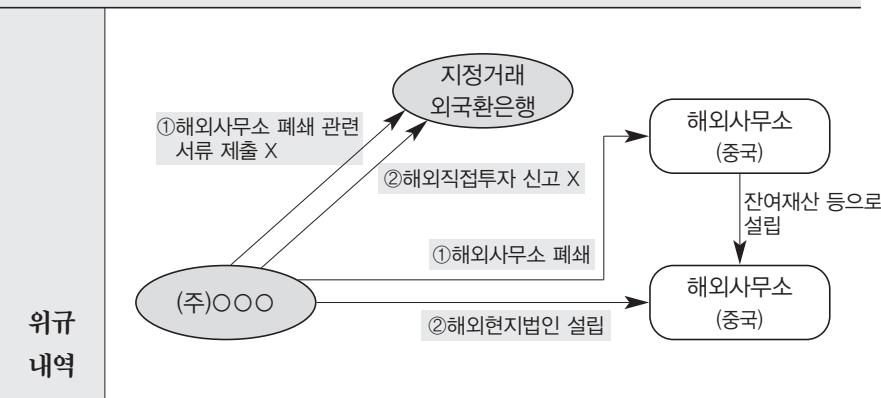


위규  
내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없이 시장조사 목적으로 인도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 ② 매월 3천달러씩 16회 사무소 운영경비를 송금하였음
- ⇒ 해외사무소 설치신고 누락

거래당사자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무소나 해외지점을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li> <li>• 현지사무소에 대한 운영경비 송금시에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신청서상 수취인이 해외지사로 추정되는 문구(××Branch, ××Office, ××Representative 등)로 기재된 경우 해외지사 설립 여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li> <li>• 해외송금의 수취인이 개인이 아닌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인 경우 송금사유 재차 확인</li> <li>• 동일 수취인에 대한 중복송금 없는 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송금 목적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li> <li>• 사전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자진신고 및 사후신고 등 적법절차를 안내</li> </ul>
관련 법규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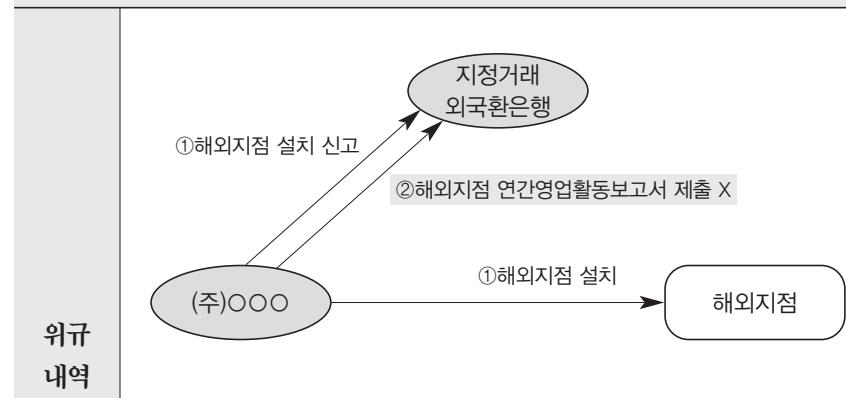
#### ⑦4 해외사무소 폐쇄 후 신고 없이 해외직접투자



거주자 (주)OOO은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 후 설치한 미국 소재 현지사무소를 폐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② 해외사무소 폐쇄로 발생한 잔여재산 및 운영중 발생한 잔여재산으로 자동차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함  
 ⇒ 현지법인 폐쇄에 따른 서류미제출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자를 폐쇄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li> <li>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 하지 않고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현지법인에는 송금할 수 없음</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와 관련된 송금액이 사무소 활동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확인</li> <li>해외자 설치완료보고, 연도별 영업활동보고 등 확인</li> <li>해외자 폐쇄 보고시 회수대상 잔여재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송금 과정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송금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현지법인에는 송금할 수 없음을 안내</li> </ul>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9-24조, 제9-25조, 제9-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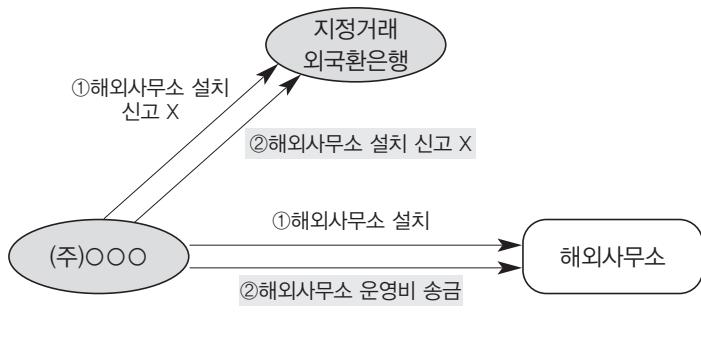
#### ⑦5 해외지점 설치 후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 미제출



거주자 (주)OOO은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해외지점 설치신고 후 해외지점을 설치하였으나,  
 ②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해당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해외지점 연간영업활동보고서 미제출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 포함)을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하여야 함</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사후관리의무 이행에 대해 상세히 안내(설명자료 교부 등)</li> <li>사후관리의 보고서 제출시기가 임박하면 해외지점 설치신고자에 사후보고 준수를 안내하고, 제출시기가 경과하였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자 설치신고자에 독촉</li> </ul>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 ⑦ 해외지사 설치신고 누락의 제재 후에도 설치신고 미이행



위규  
내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비 5만달러를 송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 없이 32차례에 걸쳐 해외사무소의 운영비를 “기타사업서비스” 명목으로 허위기재 하여 총 50만달러를 송금함
- ⇒ 해외지사 설치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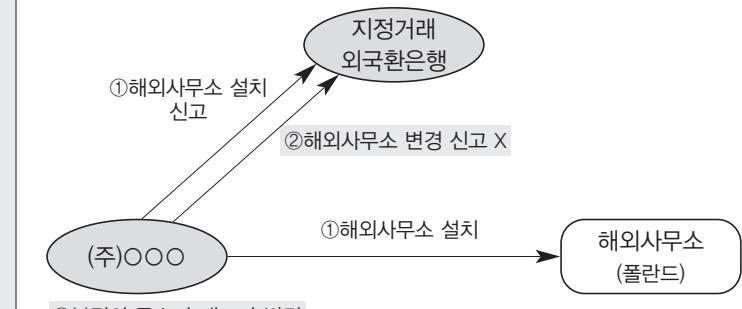
- 거래당사자
- 위규사항에 관한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신고(보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

- 유의사항
- 거래당사자가 제재기관에 대해 법규위반 자진신고를 한 경우 그 처리 경과를 확인할 필요

- 은행
- 관련 해외송금시에는 사후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신고를 유도

-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 ⑦ 해외사무소 설치 변경신고 누락



위규  
내역

- 거주자 (주)OOO은
-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 폴란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주)OOO 본점의 주소지와 대표자를 변경하였음
- ⇒ 해외사무소 변경신고 누락

- 거래당사자
- 해외지사를 설치한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신고내용 중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

- 은행
- 최초 신고시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 해외지사신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운영 필요

-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18조

## ⑧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사무소)설치 신고누락

<p><b>위규 내역</b></p> <p>비거주자 (주)OOO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지점 (주)△△△를 설치하였음 ⇒ 국내지점 설치신고 누락</p>
<p><b>유의사항</b></p> <p>거래당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과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분</li> <li>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 필요</li> <li>국내지사 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의 대표자·소재지·상호명 등이 변경된 경우 등 신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필요</li> </ul>
<p>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은 본사의 국내지사 운영 관련 자금 거래시 사전신고 유무 확인 필요</li> </ul>
<p>관련 법규</p> <p>「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9-33조</p>

## 3. 위반사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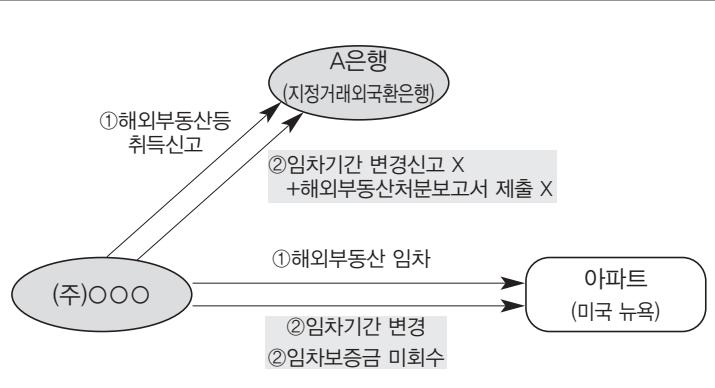
### 유형별 위반사례



### 제3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 III. 해외부동산 취득

## ⑦9 해외부동산 임차기간 변경신고 누락 및 임차보증금 미회수



위규  
내역

- 거주자 (주)OOO는
- ① 임직원 출장시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 A은행의 장에 신고 후 뉴욕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없이 임차기간을 변경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임대인과의 임차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발생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 해외부동산등 변경신고 누락, 처분보고서 미제출, 회수의무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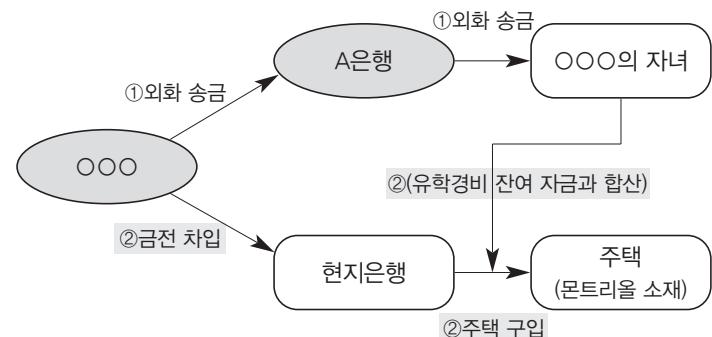
- 거래당사자
-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거래당사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처분(변경)보고서, 수시보고서 등을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은행
-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취득보고, 보유보고, 처분보고 등 사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취득신고시 거래당사자에게 사후보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9조, 제9-40조

## ⑧0 유학경비 송금을 통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누락



위규  
내역

- 거주자 ○○○는
- ① 7개월간 3차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자금으로 외화를 송금하였는데
  - ② 유학경비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합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몬트리올 소재의 1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
-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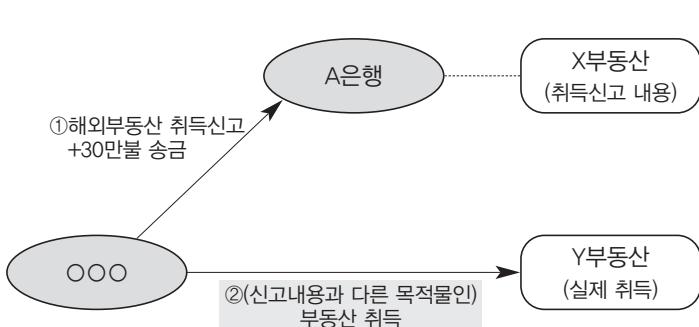
- 거래당사자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해야 함
  -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필요함에 유의

- 은행
- 통상적인 유학경비 수준을 초과하는 송금신청이 있을 경우 실제 자금 사용목적을 확인할 필요
  - 유학경비 외의 사용목적이 확인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대상이라면 관련 절차를 안내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9-39조

## ⑧① 신고수리 받은 내용과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경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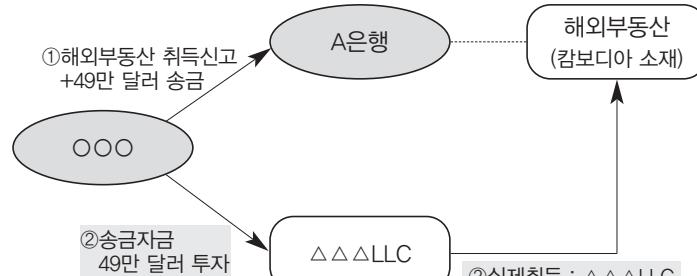


위  
규  
내  
역

거주자 OOO는

- ① 투자목적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A은행장 앞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주택 구매대금 30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 ② 취득신고한 주택을 포기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음  
⇒ 해외부동산 취득 변경신고 누락

## ⑧② 현지법상 취득절차 간소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 절차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 OOO는

- ① 캄보디아 소재 토지를 49만 달러에 매입하는 내용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 ② 실제 구입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 없이 현지법인 △△△LLC를 설립하고 송금된 자금 49만달러를 해당 현지법인에 투자하여 법인명의로 동 토지를 취득  
⇒ 해외직접투자신고 누락 및 해외부동산 취득 변경신고 누락

거  
래  
당  
사  
자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를 받은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 최초 신고수리시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명의인, 목적물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안내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검토시 신고수리 받은 내용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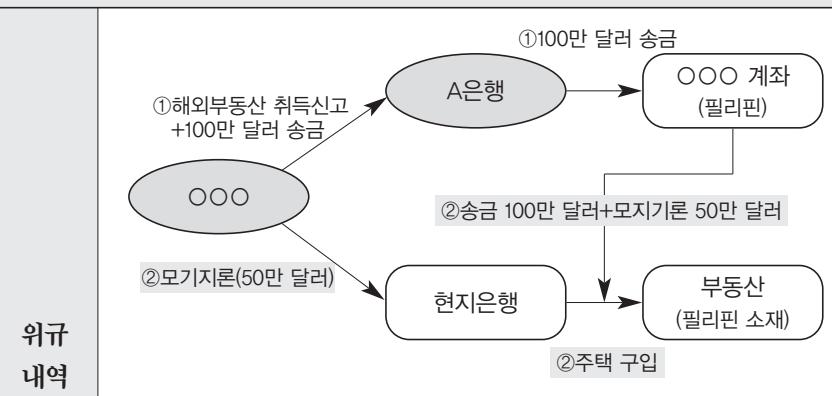
거  
래  
당  
사  
자  
유  
의  
사  
항

- 현지법상 외국인 부동산 취득절차가 복잡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므로, 해외부동산 취득명의의 변경신고의무가 있음에 유의
-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의무가 있음에 유의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5조, 제9-39조

### ⑧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후 자금조달방법 변경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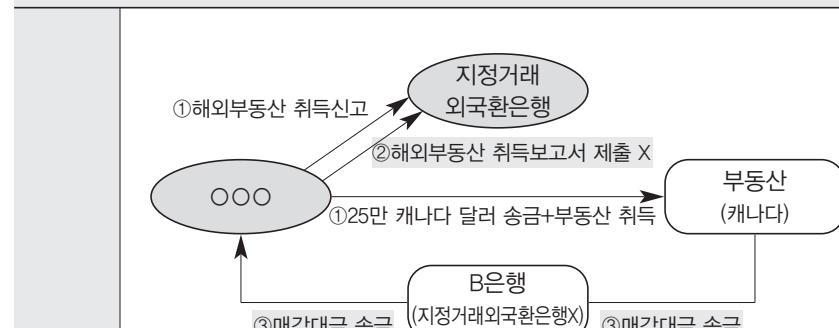
거주자 OOO는

- ① 외국환은행에게 필리핀 소재 부동산 구입자금 전액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100만 달리를 송금하였으나
  - ② 신고수리 받은 내용과 달리 송금한 100만 달러와 현지 은행으로부터 받은 모기지론 50만 달러를 합하여 150만 달러에 부동산을 구입
- ⇒ 해외부동산 취득 변경신고 누락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li> <li>•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시 매매가액 및 자금조달 방법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송금액에 한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신고수리시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명의인, 목적물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안내</li> <li>•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검토시 신고수리 받은 내용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9조

### ⑨ 해외부동산 취득보고 누락 및 지급절차 위반



거주자 OOO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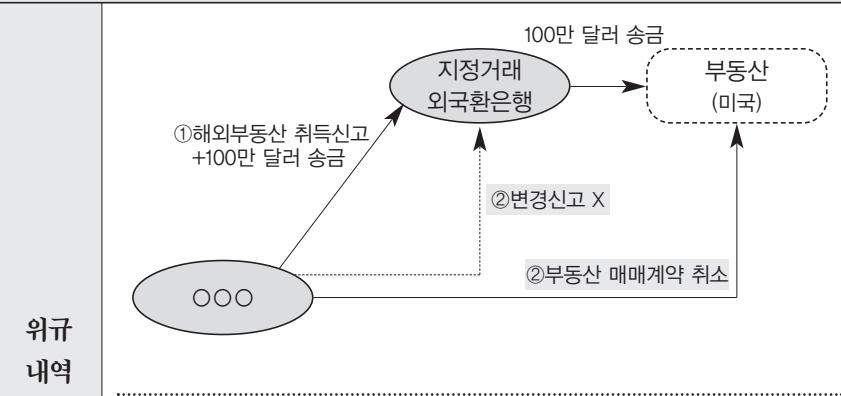
-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후 25만 캐나다 달러를 송금하여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 ②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해외 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③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송금받았음

⇒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미제출 및 지급절차 위반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거주자는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li> <li>•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시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li> <li>•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처분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분대금 회수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제 4-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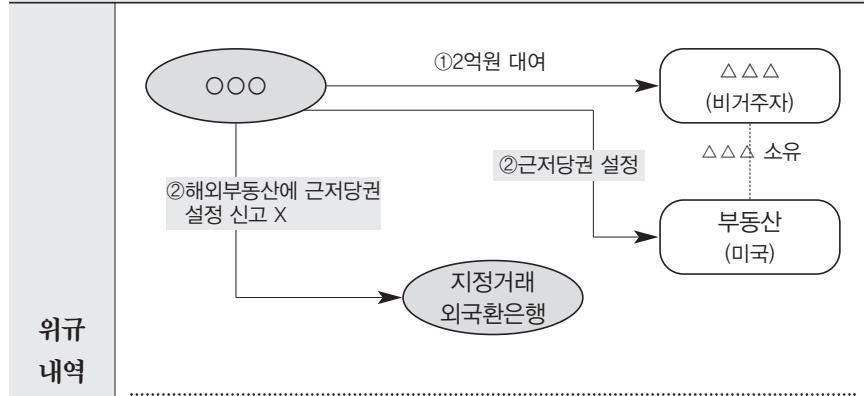
### ⑧ 해외부동산 취득 변경신고 누락



거주자 OOO는  
 ① 외국환은행장 앞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자금 100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②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 변경신고 없이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있음  
 ⇒ 해외부동산 취득 변경신고 누락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li> <li>현지 사정변경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최초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사전에 변경신고할 필요</li> <li>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송금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변경신고과정에서 자금 사용내역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신고 내용 미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시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 및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명의인, 목적물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9조

### ⑨ 해외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취득 신고누락



거주자 OOO는  
 ① 비거주자 △△△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②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채무자 △△△ 소유 미국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9만달러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 해외부동산 담보권 취득신고 누락

유의사항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뿐 아니라 담보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도 한국은행총재 앞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함에 유의</li> <li>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할 필요</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송금과정에서 송금의 목적을 확인하고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있는 경우 권리의 내용 및 실질성을 확인</li> <li>부동산 혹은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목적에 따라 신고기관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할 필요</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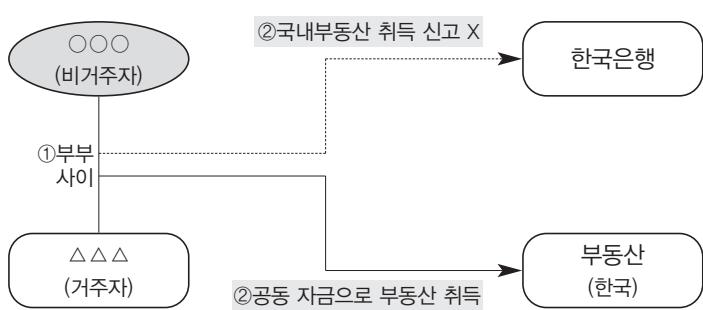
#### 제3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 IV.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⑧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누락

위규 내역	<pre> graph TD     OOO((OOO 비거주자)) --&gt; P1[부동산1]     OOO --&gt; P2[부동산2]     P1 -- "①국내부동산 취득신고 X" --&gt; KB[Korean Bank]     P2 -- "②매각대금 송금 진행 시도 (재외통포 재산반출)" --&gt; AB[A Bank]     KB -- "①부동산1 매각" --&gt; P1_Sold[부동산1 (상속 : 신고 불요)]     AB -- "②부동산2 매각" --&gt; P2_Sold[부동산2 (매입 : 신고 필요)]     </pre>
	<p>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 OOO는</p> <p>①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으로 <b>한국은행</b> 총재에게 신고 없이 국내의 주거용 <b>부동산</b>을 구입하였는데,</p> <p>②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재외통포 재산반출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던 중 취득 신고 누락 사실이 발각됨</p> <p>⇒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누락</p>
거래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을 상속(유증)받는 경우에는 취득 신고의 예외에 해당</li> <li>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해야 함에 유의</li> </ul>
유의사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부동산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li> <li>부동산 취득자금을 해외에서 전액 반입하였는지 혹은 국내에서 일부 조달하거나 보증금 있는 집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총재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달라짐을 유의</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 ⑧⑨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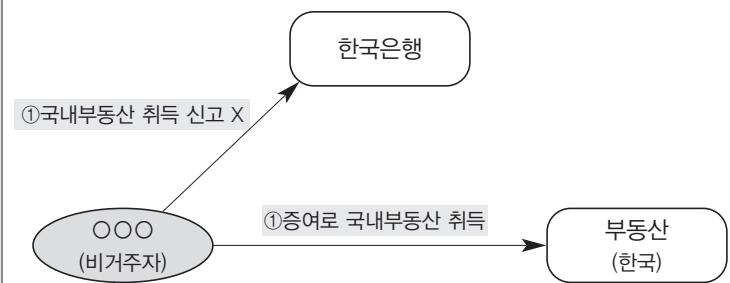


위규  
내역

싱가포르 국민인 비거주자 OOO는

- ① 한국 국적 거주자 △△△과 싱가포르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사용할 부동산 구입을 결정하고
  - ②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와 공동의 자금으로 대구 소재 아파트를 한화 3억원에 매입
- ⇒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누락

## ⑧⑨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누락



위규  
내역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 OOO는

- 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한국의 조부로부터 서울의 나대지를 증여받았고,
  - ② 해당 토지의 처분 자금 송금과정에서 신고누락 사실을 알게 되어 자진신고
- ⇒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누락

거래당사자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방법 등에 따라 한국은행 혹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유의사항

- |    |  |
|----|--|
| 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부동산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li> <li>• 부동산 취득자금을 해외에서 전액 반입하였는지 혹은 국내에서 일부 조달하거나 보증금 있는 집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총재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달라짐을 안내</li> </ul> |
|    |  |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거래당사자  
유의사항

-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를 해야 함에 유의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유증)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면제대상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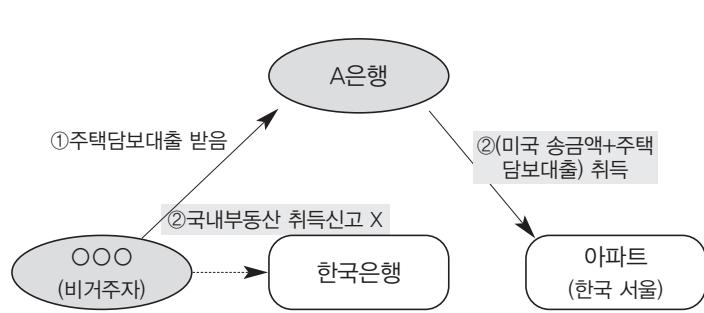
은행

- |    |  |
|----|--|
| 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송금 과정에서 자금 출처 및 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국내 부동산 처분 자금인 경우 관련 신고절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li> <li>•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진신고절차를 안내</li> </ul> |
|    |  |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 ⑨⓪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 OOO는

- ①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아
  - ②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서 송금된 금액을 합쳐 서울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를 한화 4억 8천여만원에 취득
- ⇒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누락

- 거래당사자**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방법 등에 따라 한국은행 혹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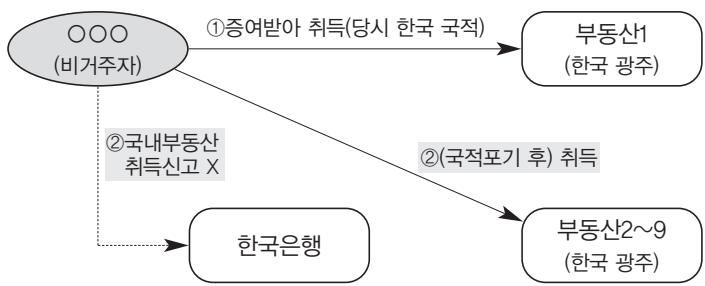
유  
의  
사  
항  
은  
행

-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부동산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
- 부동산 취득자금을 해외에서 전액 반입하였는지 혹은 국내에서 일부 조달하거나 보증금 있는 집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총재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달라짐을 안내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 ⑨⓫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누락



위  
규  
내  
역

국민인 비거주자 OOO는

- ① 과거간호사로 독일에서 30년간 거주하면서 광주 소재 부동산 1곳을 증여 받았는데
  - ②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뒤 해당 매각자금으로 광주 소재 부동산 8곳을 취득하였음
- ⇒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누락

거래당사자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신고 예외에 해당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외국인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됨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

유  
의  
사  
항  
은  
행

-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부동산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
- 자금 조달방식 등을 확인하여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총재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신고누락이 확인된 경우 자진 신고 절차를 안내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 ⑨②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 누락

위규 내역	
	<p>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 ○○○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p> <p>① 거주자인 숙부 △△△로부터 경기도 소재 토지의 지분 1/2를 증여 받았으며,</p> <p>② 위 토지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건물의 지분 1/2를 취득</p> <p>⇒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누락 2건</p>
거래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를 해야 함에 유의</li> <li>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유증)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면제대상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li> </ul>
유의사항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부동산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li> <li>자금 조달방식 등을 확인하여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총재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신고누락이 확인된 경우 자진 신고 절차를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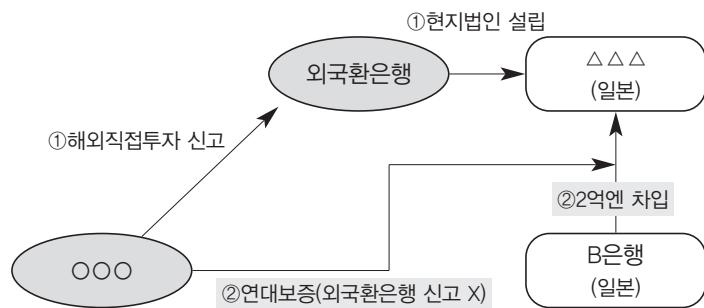
## 3. 위반사례편

### 유형별 위반사례



### 제4장 현지금융 및 기타

### ⑨③ 거주자의 보증이 있는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신고 누락



위규  
내역

거주자 OOO는

- ① 외국환은행장에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뒤 현지법인 △△△.LTD를 설립하였는데,
- ② △△△.LTD가 일본의 B은행으로부터 받은 2억엔의 대출 채무에 대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하였음

⇒ 현지금융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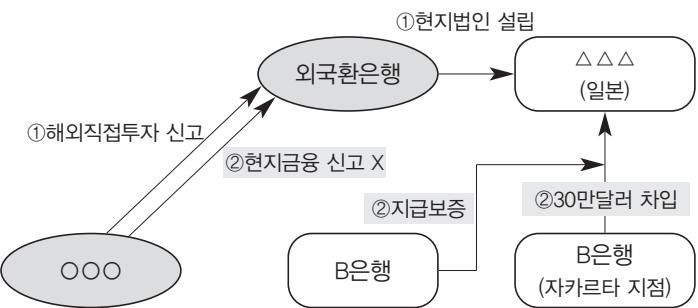
- 유의사항
-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거주자가 보증등을 제공하는 경우 보증등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

- 은행
-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의 제공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함을 현지법인 설립 신고시에 안내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 ⑨④ 은행의 보증이 있는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신고 누락



위규  
내역

거주자 OOO는

- ① 외국환은행장에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현지법인 (주)△△△를 설립하였는데,
- ② (주)△△△가 국내의 B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B은행의 자카르타지점으로부터 30만달러를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으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현지금융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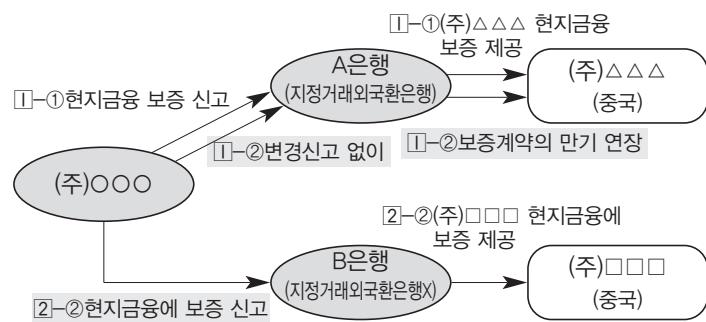
- 유의사항
-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함

- 은행
-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당행이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 ⑨5 국내 본사의 보증이 있는 현지법인의 현지 금융 신고 누락



### 위 규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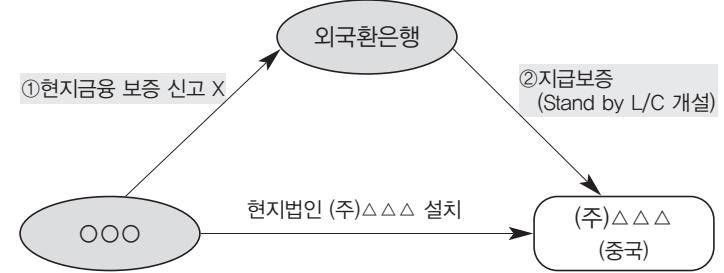
① 거주자 (주)OOO는

- ① 중국 소재 자회사 (주)△△△의 현지금융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 A은행에 현지금융 관련 신고를 마쳤으나,
- ② (주)△△△의 현지금융 계약의 연장에 관한 변경신고 누락

② 거주자 (주)OOO는

- ① 중국 소재 현지법인 (주)□□□의 현지금융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면서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 A은행이 아닌 B은행에 보증계약신고서를 제출
- ⇒ 현지금융 (변경)신고 누락

## ⑨6 Stand by L/C를 통한 지급보증이 있는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신고 누락



### 위 규 내 역

거주자 OOO는

- ① 중국 소재 현지법인 △△△(주)가 현지금융을 받는 부분에 관하여
- ② 국내 A은행의 Stand by L/C를 개설을 통해 지급보증을 받았음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현지금융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현지금융 신고 누락

### 거 래 당 사 자

- Stand by L/C를 통해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사전에 신고해야 함

### 유 의 사 항 은 행

- 외국환은행은 Stand by L/C 형태의 지급보증시 반드시 외국환거래 법상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
- 자행이 현지금융에 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현지금융에 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닐 경우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연보를 보고하도록 안내

###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 거 래 당 사 자

-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보증제공등을 하는 경우, 보증제공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변경)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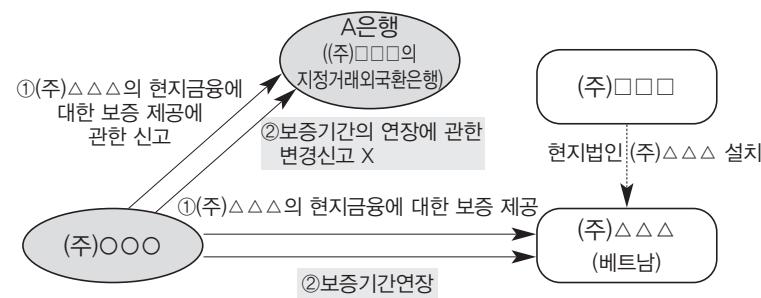
### 유 의 사 항

-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의 제공은 사전신고 대상임을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신고시에 안내
- 현지금융 보증 만기의 도래가 임박한 경우 연장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시 사전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안내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가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하도록 안내

### 관 련 법 규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 ⑨7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만기 연장의 변경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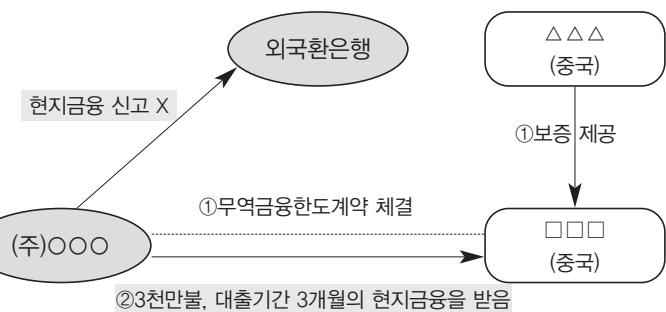
거주자 (주)○○○는

- ① 거주자 □□□(주)가 설치 한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인 △△△.CO.,LTD가 현지 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차입하는 부분에 보증을 제공하여 A은행에 이에 관한 신고를 마쳤으나,
- ② 보증계약의 만기 전 보증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현지금융 변경신고 누락

- 거래당사자
-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거주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의 제공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 ⑨8 거주자의 보증 등의 제공이 없는 거주자의 현지금융 신고 누락



위 규  
내 역

거주자 (주)○○○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없이,

- ① 관계사인 중국의 △△△△유한공사의 보증을 받아 □□□유한공사와 신용공여기간 1년, 8억달러 한도의 무역금융한도계약을 체결하고
- ② 대출기간 3개월, 3천만불의 현지금융을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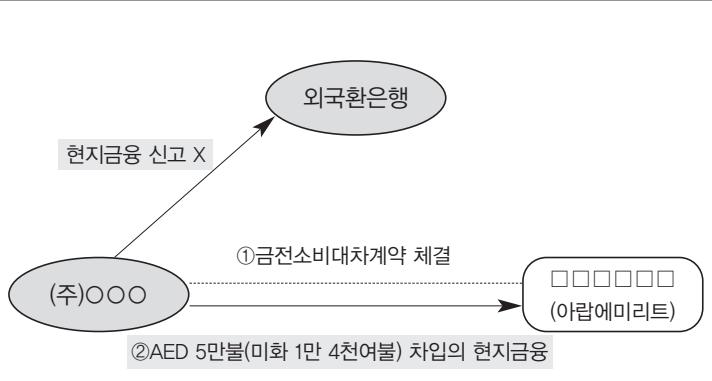
⇒ 현지금융 신고 누락

- 거래당사자
-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할 때 다른 거주자의 보증등의 제공이 없거나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함

- 유의사항 은행
- 해외송금이 있는 경우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 거주자의 현지금융에 대해 거주자의 보증등의 제공이 없거나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제8-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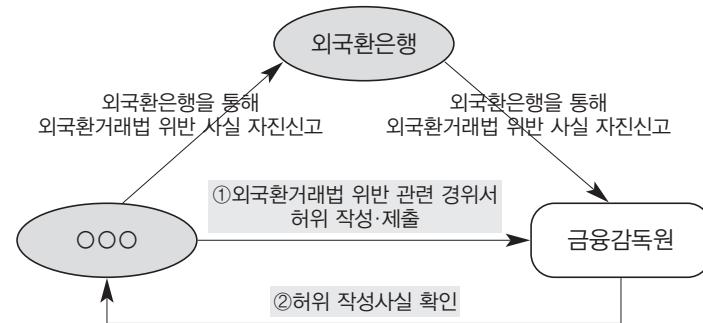
## ⑨ 거주자의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누락



위규  
내역

- 거주자 (주)OOO는
- ① 아랍 에미리트의 △△△ DMCC에 투자할 목적으로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현지 변호사인 비거주자 □□□□□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ED 5만(미화 1만4천여 불)을 차입
- ⇒ 현지금융 신고 누락

## ⑩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조사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위규  
내역

- 거주자 (주)OOO는
- ① 금융감독원에 '국내 비상장법인 (주)△△△의 주식을 비거주자 □□□에게 매각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자진신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 ②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횡령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외국환거래를 꾸며내고 경위서 및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짐
- ⇒ 외국환거래 위반사건 조사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유 의 사 항	거 래 당 사 자	•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할 때 다른 거주자의 보증등의 제공이 없거나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함
	은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송금이 있는 경우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li> <li>• 거주자의 현지금융에 대해 거주자의 보증등의 제공이 없거나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유 의 사 항	거 래 당 사 자	• 외국환거래 조사 및 제재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 동사례의 경우 횡령에 대해 검찰통보
	은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신고 유도 및 관련절차 소개시 위규당사자에게 제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li> </ul>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법」 제32조

